

발간등록번호

전북교육 2025-045

더 특별한 전북교육  
학생중심 미래교육



# 2025

## 전북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계획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JEONBUK STATE OFFICE OF EDUCATION



I. 전북교육 방향	1
II. 전북 특수교육 방향	5
III. 전북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방향	9
1. 운영 목적	11
2. 관련 근거	11
3. 운영 방침	12
4. 주요 기능	12
IV. 전북 특수교육지원센터 조직 및 현황	15
1. 특수교육지원센터 조직 및 기능	17
2. 전북 특수교육지원센터 관리 운영 체계	17
3. 2025 전북 특수교육지원센터 현황	20
V. 사업별 운영 계획	21
1. 순회교육	23
2. 통합교육 지원	24
3. 조기발견 및 영유아 교육지원	25
4. 진단평가	28
5. 정보관리 및 홍보	29
6. 교수·학습활동 지원	30
7.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31
8.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33
9. 행동중재 지원	35
10. 장애유형별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36
11. 진로직업교육	37
12. 진학상담 및 전환교육	38
VI. 행정사항	39
※ 부록	49



2025  
전북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계획



# 전북교육 방향





#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우는 전북교육





2025  
전북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계획



# 전북 특수교육 방향





## 비 전

### 모두가 존중받는 학생 중심 특수교육

## 목 표

학생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강화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확대

미래를 준비하는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 추진 과제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 ▶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강화
- ▶ 특수학교(급) 다양화 및 특성화
- ▶ 특수교육교원 역량 강화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 ▶ 협력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 ▶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 ▶ 장애학생 인권 강화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 ▶ 장애 유형·정도에 따른 교육지원 확대
- ▶ 맞춤형 디지털 교육확대

4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 ▶ 지역 기반 진로·직업교육 지원
- ▶ 특수교육대상학생 취업 지원강화
- ▶ 관계부처 연계 취업 지원 확대



2025  
전북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계획



# 전북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방향

1. 운영 목적 .....	11
2. 관련 근거 .....	11
3. 운영 방침 .....	12
4. 주요 기능 .....	12





## 1 운영목적

-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장애유형 및 정도,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특수교육 지원
- 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단·평가 전문성 강화를 통한 특수교육 보장
- 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 확대로 교육력 제고
- 라. 지역 중심의 맞춤형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원체제 강화

## 2 관련 근거

- 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제11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시·도교육청 및 모든 하급 교육행정기관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시·도교육청, 하급교육행정기관이나 특수학교,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 초·중·고등학교 또는 관할지역의 관공서(장애인복지관을 포함한다) 등 특수교육대상자를 비롯한 지역주민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7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제7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① 교육감은 법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담당 업무를 전담하는 특수교육 분야의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은 지역의 지리적 특성 및 특수교육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의 하급 교육행정기관에 2 이상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④ 특수교육지원센터는 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과의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⑤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 과정에서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 또는 학생이 이전에 의료적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료적 진단을 보건소, 병원 또는 의원에 의뢰하여야 한다.
- ⑥ 교육감은 제5항에 따라 의료적 진단을 보건소, 병원 또는 의원에 의뢰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3

## 운영 방침

- 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 계획 수립 및 관리, 지원 등을 담당하고 교육지원청 소속 특수교육지원센터는 관할 지역 내의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 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
- 다. 특수교육지원센터는 교육장이 센터장으로 통할하고, 교육지원과장은 부센터장,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는 업무 담당자로 센터를 운영한다.
- 라.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진단평가실, 진로직업교육실, 영아교실, 교육활동실, 연수실, 사무실 등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 마.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전문성 신장 및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업무담당자 회의, 역량강화연수, 우수사례 공유회, 워크숍 등을 실시한다.
- 바.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센터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등을 하여 운영 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이를 운영 계획에 반영한다.
- 사.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 아. 이 외의 사항은 관련 법령, 2025 교육부 특수교육 운영계획, 2025 전북 특수교육 운영계획, 주요 사업별 운영계획 및 업무 길라잡이 등에 따라 운영한다.

### 4

## 주요 기능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조기 발견 및 홍보
2.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 및 평가
3.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및 관련 상담
4. 특수교육대상학생 정보 관리(선정, 배치, 재배치, 유예, 면제 등)
5.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 교육지원
6. 특수학급 미설치교 특수교육대상학생 순회교육

7. 관련 서비스(상담지원, 가족지원, 치료지원, 지원인력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학습보조기기지원, 방과후학교지원, 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
8.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9. 특수교육대상학생 진학 및 전환교육 지원, 관련 학부모교육
10.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긍정적 행동지원
11. 연차보고서, 특수교육실태조사, 특수교육통계, 인권실태조사 등에 대한 지원
12.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및 인권침해 신고 시스템 구축·운영
13. 특수교육대상학생 인권보호 교육 지원
14. 특수교육 연수 및 교수·활동의 지원
15.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합교육 지원
16. 지역별 특화사업에 대한 활성화 지원
17.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2025  
전북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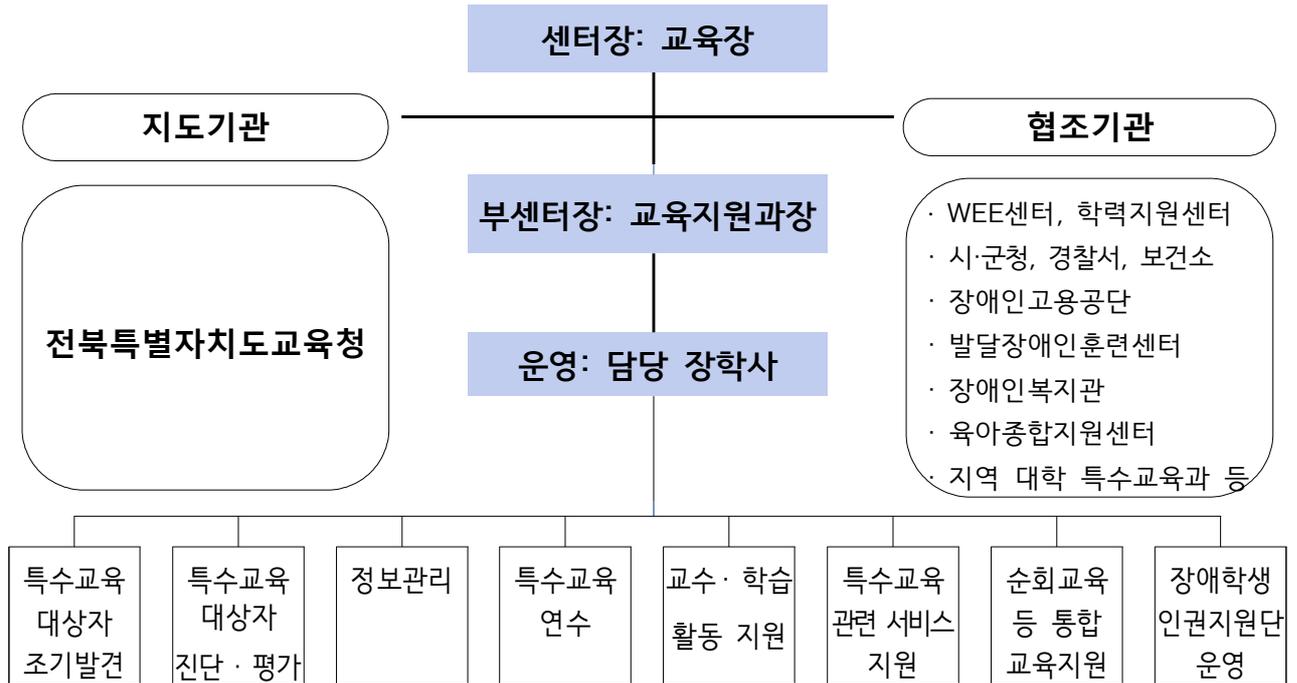
# 전북 특수교육지원센터 조직 및 현황

1. 특수교육지원센터 조직 및 기능 .....	17
2. 전북 특수교육지원센터 관리 운영 체계 .....	17
3. 2025 전북 특수교육지원센터 현황 .....	20





## 1 특수교육지원센터 조직 및 기능



## 2 전북 특수교육지원센터 관리·운영 체계

### 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 특수교육지원센터 기본 운영 지침, 예산 및 인력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전담 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교사, 운영강사, 치료사, 특수행정실무사)

직위	업무	비고
장학관	운영 총괄	겸임
장학사	특수교육지원센터(진로직업센터 포함) 기획 및 운영 총괄 컨설팅, 연수 및 워크숍, 특성화 센터 운영지원 등	2
주무관	특수교육지원센터 예산(자원배분포함)관리, 치료지원, 계약제 교원 및 교육공무직 인건비 교부 등	1
특수교사	원격수업 및 건강장애학생 관리, 전북발달장애훈련센터 진로체험 운영, e페스티벌, 진로드림 페스티벌 운영	4
특수행정실무사	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관리 및 업무 지원	1

## 나. 지역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직위	업무	비고
교육장	특수교육지원센터 통괄	센터장
교육지원과장	특수교육지원센터 기획,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총괄	부센터장
담당 장학사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통합교육 지원단 및 인권지원단 총괄, 특수학급 컨설팅, 특수교육 관련 정책 협력 및 민원 처리 등	
특수교사	순회교육, 센터 내 주요 업무 운영	
주무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특수교육지원센터 예산 관련 업무 등	
운영 강사	센터 내 주요 업무 운영	
특수행정실무사	센터 행사 및 업무 지원	

- 교육지원청은 센터장(교육장)을 중심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전담 인력 관리, 예산 편성 및 집행 등 전반적 운영 관리와 특수교원의 순회교육 및 전담 인력의 복무 등을 관리함
- 각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게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 교육지원청과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 (예시) ]

구분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주요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교육 운영계획 수립 및 설명회 운영</li> <li>-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선정·배치)</li> <li>- 계약제 교원 및 전담 인력 채용</li> <li>- 특수(일반)학급 특수교육 관련 컨설팅</li> <li>- 특수교육 관련 예산 집행 지원 (지출, 각종 재정교부, 인건비 교부 등)</li> <li>- 관련 서비스 행정 업무 지원 (지원인력 관리 및 배치, 치료지원, 통학비, 방과후 업무 등 행정적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계획 수립</li> <li>- 진단평가 및 선별검사, (진학) 상담</li> <li>- 순회교육 운영</li> <li>-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수·학습활동 지원</li> <li>- 특수교사, 통합학급 교사 연수</li> <li>-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및 통합교육 지원</li> <li>-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지원</li> <li>-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li> <li>-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지원</li> <li>- 행동중재지원단 운영</li> <li>- 관련 서비스 운영 및 지원(치료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가족지원 등)</li> <li>- 실태조사, 연차보고서 등 각종 통계</li> <li>- 기타 특수교육지원센터 관련 사항 등</li> </ul>

## 다. 운영 내용

- 특수교육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 센터 내 교육전문직원, 행정직원 등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원활한 특수교육 지원
  - 특수교육 지원 확대 및 특수교육력 제고를 위해 중심축 역할
  - 진단·평가, 상담, 장애 영·유아교육, 교수학습지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직업교육지원 등 학교 현장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영역을 지원
  
- 특수교육지원센터 독립성 확보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별도 운영 조직과 독립된 공간 확보
  - 교육지원청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 **고유의 업무 수행 강화**
  
- 지역 중심의 특성을 반영한 특성화 센터 운영 확대
  - 진로직업 특수교육지원센터: 전주, 군산, 익산
  - 장애영역별 거점센터: 전주(청각장애), 군산(지체장애)
  - 행동중재 거점센터: 익산
  - 문화예술 중점센터: 3개 센터(예정)
  - 체육활동 중점센터: 1개 센터(예정)
  - 그 외 지역적 특성 및 학생의 요구에 따라 특성화 센터 운영 및 우수 사례 확산

2025.1.1.기준

순	센터명	설치장소	인력 현황							계
			순회 특수교사				전담인력			
			유	초	중	소계	운영강사	치료사	특수행정실무사	
1	전주	전주초등학교 내	3	4	3	14			2	16
2	전주진로직업				4					
3	군산	군산교육지원청	2	2	2	10	2	1	1	14
4	군산진로직업				4					
5	익산	익산시 인북로 171	2	3	3	12			3	15
6	익산진로직업				4					
7	정읍	정읍교육지원청	1	2	2	5			1	6
8	남원	남원교육지원청	1	2	2	5			1	6
9	김제	김제교육지원청	1	2	2	5	1	1	1	8
10	완주	완주교육지원청	1	2	2	5	1		1	7
11	진안	진안교육지원청	1	1	2	4	1		1	6
12	무주	무주교육지원청	1	1	2	4			1	5
13	장수	장수읍 장천로 250	1	1	2	4				4
14	임실	임실교육지원청	1	1	2	4	1		1	6
15	순창	순창교육지원청	1	1	2	4			1	5
16	고창	고창교육지원청	1	1	2	4	1		1	6
17	부안	부안교육지원청	1	2	2	5			1	6
18	도교육청	유초등 특수교육과		2	2	4			1	5
계			18	27	44	89	7	2	17	115

※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전담 인력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강사: 특수교육지원센터 관련 업무(단, 순회교육은 제외)
- 치료사: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순회 치료지원, 치료지원 진단평가, 상담 등
- 특수행정실무사: 기관 행정업무 지원 등(교육지원청 업무분장에 의함)

2025  
전북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계획



# 사업별 운영 계획

1. 순회교육 .....	23
2. 통합교육지원 .....	24
3. 조기발견 및 영유아교육지원 .....	25
4. 진단평가 .....	28
5. 정보관리 및 홍보 .....	29
6. 교수 · 학습 활동 지원 .....	30
7.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	31
8.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	33
9. 행동중재 .....	35
11. 장애유형별 거점 센터 .....	36
12. 진로직업교육 .....	37
13. 진학상담 및 전환교육 .....	38





## 1 순회교육

### 가. 운영 목적

- 1) 특수교육대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의무교육 실현
- 2)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 정도 및 배치 환경에 적합한 교육기회 제공

### 나. 운영 방침

- 1)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순회교육은 일반 학교(특수학급 미설치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통합교육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정규 교육과정 내에 운영
- 2)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특수교사는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교수·학습활동, 개별화교육 지원, 상담활동, 장애이해교육, 특수교육 관련 연수 및 자문 활동 등을 통해 통합교육을 지원
- 3) 순회교육은 방문교육 외에 원격교육, 가정교육, 출석교육 및 체험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
- 4) 순회교육 대상자는 학부모와 학교(유치원 포함)에서 신청을 받고,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 및 순회교육 실시 시기 등을 결정
- 5) 순회교육 운영 일정은 순회교육 대상 학교의 학사일정에 준하여 운영하되, 각 학교 및 센터 실정에 맞춰 운영 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 6) 순회교육 1시간 기준 수업 시간은 유치원 30분, 초등학교 40분,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으로 운영하되, 학생의 장애유형 및 정도, 학습 내용 등에 따라 융통성 있게 조정
- 7) 그 외 자세한 사항은 「특수교육대상학생 순회교육 길라잡이」에 따름

#### 안내 및 협조사항

- 【참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순회교육 길라잡이」 (전북, 2024)
- 【참고】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 길라잡이 64쪽」 (전북, 2024)
- 【제출】 2025 특수교육대상학생 순회교육 운영계획 및 현황 (25.3.28.까지)
- 지역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운영하되, 특수교사는 반드시 순회교육 실시

## 2 통합교육지원

### 가. 운영목적

- 1) 특수교육대학생의 통합교육 지원 확대로 특수교육력 강화
- 2) 장애인식개선을 통해 장애공감 문화 확립 및 학교의 통합교육 분위기 확산

### 나. 운영방침

- 1) 특수학급 미설치교 순회교육은 통합교육지원 중심으로 운영
- 2) 특수학급 미설치 일반학교 대상 통합교육계획 수립 지원,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및 작성 지원, 통합학급 대상 특수교육 관련 교수학습방법 및 교육자료 지원, 행동중재 및 생활지도 지원, 기타 특수교육 관련 상담 등을 지원
- 3)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통합교육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장 중심 맞춤형 통합교육 지원
- 4) 찾아가는 장애이해 교실 운영 및 장애 공감 문화 확산 홍보
- 5) 지속적이고 연계성 있는 장애인식 개선 프로그램 지원
- 6) 지역 내 통합학급 교사 및 교(원)장, 교(원)감] 대상 통합교육 관련 연수 지원
- 7)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특수교육 관련 정보 안내
- 8) 그 외 사항은 2025 전북 통합교육 운영계획에 따름

### 안내 및 협조사항

- 【참고】 2025 전북 통합교육 내실화 운영계획 (기본계획 탑재)
- 【참고】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 길라잡이 10쪽」 (전북, 2024)
- 【참고】 「장애공감문화확산을 위한 교육자료」 (유아, 초등,중학교, 고등학교용)  
국립특수교육원 - 에듀에이블 - 장애공감자료 - 인권교육자료
- 【제출】 2025 통합교육지원단 운영계획 (25.3.28.까지)  
2025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 (25.3.28.까지)

### 가. 운영목적

- 1) 장애의 조기발견 및 맞춤형 지원을 통한 2차 장애 예방 및 발달 촉진
- 2) 장애영유아의 연속적 · 종합적 접근을 통해 영유아단계부터 체계적인 특수교육 지원 강화

### 나. 운영방침

- 1) 특수교육대상 장애영아 진단평가 대상은 0세부터 만 3세 미만의 영아로 함
- 2) 영유아 발달을 고려한 적절한 진단평가 및 교육진단 실시
- 3)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장애 영유아의 조기발견 및 의무 · 무상교육 제도와 관련된 홍보 및 상담 강화
- 4)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장애인복지관 등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안내 및 자료 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 5) 특수교육지원센터 누리집에 국립특수교육원 《온맘 - 장애자녀 부모지원 종합 시스템》([www.nise.go.kr/onmam](http://www.nise.go.kr/onmam)) 연계 탑재
- 6)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장애영아 진단평가 및 선정과 관련하여 유선 및 대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중 수시 상담 실시
- 7) 특수교육지원 요구 판단을 위해 장애 영아 선별에 필요한 검사 도구 구비 및 담당 교사의 전문성 신장 연수 실시
- 8) 장애영유아 대상 순회교육 및 통합교육 지원, 자녀 양육 등의 학부모 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지원 제공

#### ※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 교육

- 대상: 특수교육대상 영아 및 그 가족
- 내용: 개별화가족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가족지원 및 상담 등
- 방법: 순회교육, 센터 방문교육, 통신교육, 가정교육, 체험교육 등으로 구성
- 수업일수: 매 학년도 150일 기준, 장애영아의 건강상태 및 교육과정 운영상의 필요한 경우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범위에서 감할 수 있음

#### 다. 장애 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 계획

구분	추진 내용				
도입 시기	- 2024년 3월 ~				
지원 대상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의뢰한 0세~취학 전 영·유아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추적 검사요망 이상 단계				
	<table border="1"> <thead> <tr> <th>단계구분</th> <th>빠른 수준</th> <th>또래 수준</th> <th>추적검사 요망</th> <th>심화평가 권고</th> </tr> </thead> </table> <p>* 병원에서 발급한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의 발달평가 결과 ※ 신청자가 많을 경우 높은 연령 우선 지원(생년월일 기준) - 전주, 군산, 익산, 남원, 김제, 완주센터 우선 지원</p>	단계구분	빠른 수준	또래 수준	추적검사 요망
단계구분	빠른 수준	또래 수준	추적검사 요망	심화평가 권고	
지원 금액	- 1인당 1회, 25만원 이내 실비 지원 ※ 보건소에서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지원금의 차액 중 본인부담금 10%를 제외한 금액 지원				
지원 범위	- 진단비, 검사비 항목				
지원 방법	- 학부모가 진단검사비 선 결제 후, 교육(지원)청에 진단검사비 지원 신청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발달평가결과 추적검사 요망 이상).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중 1부 - 진단비 영수증(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포함) 원본 1부 - 통장 사본 1부 - 장애영유아 진단검사비 신청서 1부 ※ 제출 서류 중 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후 사본으로 제출 가능함				

#### 안내 및 협조사항

- 【참고】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 길라잡이 20쪽」 (전북, 2024)
- 【참고】 「영유아 검진(진단) 기관 검색」  
국민건강보험 - 건강IN - 검진기관/병원 찾기
-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대상영아가 배치될 경우, 해당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 개별화가족지원계획(예시)

영아명	○○○	생년월일	2023.00.00.	장애영역	발달지체
반	○○반	성별	남/여	담임교사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치료지원(○○운동발달센터/심리운동)			
장기 목표	운동	· 도움 없이 1분 이상 바닥에 앉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운동	· 1분 이상 잡고 선 자세를 유지할 수 있다.			
	적응행동	· 빨대컵으로 음료를 마실 수 있다.			
보호자 요구 및 상담결과		앉기, 서기, 네발 기기 등 신체운동영역의 발달 요구			
가족지원 내용		부모상담, 양육상담, 안전교육 등			
지도기간		<b>2024.3. - 2024.7.</b>			
영역명	현재수행수준	단기목표	지도내용	평가	
운동	신체적 도움을 받아 바닥에 앉아 5~10초 균형을 유지함	도움 없이 30초 이상 바닥에 앉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1. 신체적 도움을 받아 바닥에 앉기 2. 양손으로 바닥을 짚어 앉은 자세 유지하기 3. 흥미로운 장난감을 바라보거나 조작하며 앉은 자세 유지하기	신체적 도움 없이 바닥에 앉아서 양손을 사용함	
운동	신체적 도움을 받아 잡고 선 자세를 5초 정도 유지함	30초 이상 잡고 선 자세를 유지할 수 있다.	1. 신체적 도움을 받아 잡고 서기 2. 물체에 양팔을 포개어 엮드리고 다리에 힘을 주어 선 자세 유지하기 3. 피아노 등 장난감을 조작하며 선 자세 유지하기	앉은 자세에서 네발 기기, 잡고 서기 등 스스로 자세 변형이 가능하며, 잡고 선 자세를 30초 이상 유지함	
적응 행동	젓병을 사용함	빨대컵을 눌러주면 음료를 삼킬 수 있다.	1. 빨대를 입에 물어보고 교사가 뚜껑을 눌러주면 빨대에서 나오는 음료를 마시기 2. 컵에 달린 빨대를 입으로 탐색하며 빨대 빨기를 시도하기	교사가 빨대컵 뚜껑을 눌러주면 나오는 음료를 삼킬 수 있음	

## 4 진단평가

### 가. 운영목적

- 1)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진단평가 체계구축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
- 2) 장애 유형 및 정도, 교육적 요구 등을 고려한 교육환경 배치로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학습권 보장

### 나. 운영방침

- 1)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위한 진단평가는 0세부터 만17세까지의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시·군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담당
- 2)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지원 요구를 진단하기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진단평가팀을 구성·운영하고 필요할 경우 진단평가 협력 기관에 의뢰
- 3) 진단평가는 운영계획 및 관련 절차에 근거하여 연중 실시하되, 신입생 입학에 위한 진단평가는 별도의 계획에 따라 시행

- ※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진단·평가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평가를 시행
- ※ 교육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 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제공할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부모 등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 4) 진단평가팀은 진단평가 관련 관찰 및 면담, 선정배치 관련 상담, 진단평가 시행, 진단평가결과 해석 및 제언,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 여부 및 교육지원 서비스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의 역할 수행
- 5)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진단평가팀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및 워크숍 권장

### 안내 및 협조사항

- 【참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를 위한 진단평가 업무 길라잡이
- 【참고】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 길라잡이 13쪽」 (전북, 2024)
- 【제출】 2025 진단평가팀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특수교육 운영계획 포함하여 제출)
- 학년 초 지역별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관련 연간계획 수립 및 관내 학교 안내

## 5 정보관리 및 홍보

### 가. 운영목적

- 1) 특수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정보관리 및 통계 관리
- 2) 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특수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

### 나. 운영방침

- 1) 특수교육대상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특수교육 통계자료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업무 담당자 지정 및 수시 관리
- 2) 업무 담당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진단평가, 배치, 재배치 등의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고 관리(개인정보보호 철저)
- 3) 일반학교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를 홍보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 협조 체계 구축
- 4)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홈페이지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적극 홍보

### 안내 및 협조사항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서면심의 포함) 후 학생 정보 정기적 업데이트 및 당해연도 파일 누적 관리
- 특수교육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특수교육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상시 홍보

## 6 교수·학습 활동 지원

### 가. 운영목적

- 1) 장애 특성 및 정도를 고려한 학생 맞춤형 교육활동 지원
- 2) 지역 내 기관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으로 특수교육력 향상

### 나. 운영방침

- 1) 학생·학부모의 요구, 지역 특성(지역별 수요와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동아리, 방과 후, 방학 중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 2) 센터 내 교육실 활용, 학교(급) 강사 파견 교육 프로그램, 지역 내 전문기관 연계 외부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 가능
- 3) 문화예술·체육 활동, 현장체험활동, 디지털 교육 등 학생의 특기·적성 신장 및 미래 역량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 중심으로 운영하되 특수학급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유사하거나 중복된 내용은 지양
- 4) 학생 수요 및 센터 전담 인력 수 등을 고려하여 개설 프로그램 수 및 운영 횟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
- 5) 센터별 수요에 따라 방학 중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수학교(급) 계절제 방과 후 프로그램과 이중·중복 지원 지양
- 6) 세부계획 수립 시 지도계획 및 교육활동일지, 학생 출결 관리, 학생 건강 상태 확인 및 인수인계 방법 등을 포함
- 7) 학생 및 운영 인력 대상 사전 안전교육, 차량 안전, 위생관리, 비상 대피 계획, 비상 연락망 마련 등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운영
- 8) 지역별 특색있는 특수교육 활동자료를 개발 및 보급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특수교육 관련 교육자료 공유 활성화

### 안내 및 협조사항

- 【신청】 2025년도 국가시책 특별교부금(특수교육) 신청 (25.2월중)  
문화예술중점(3개 센터), 체육활동중점(1개 센터) 예정
- 교육공백이 발생하는 방학 중 문화예술·체육활동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확대

## 7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 가. 운영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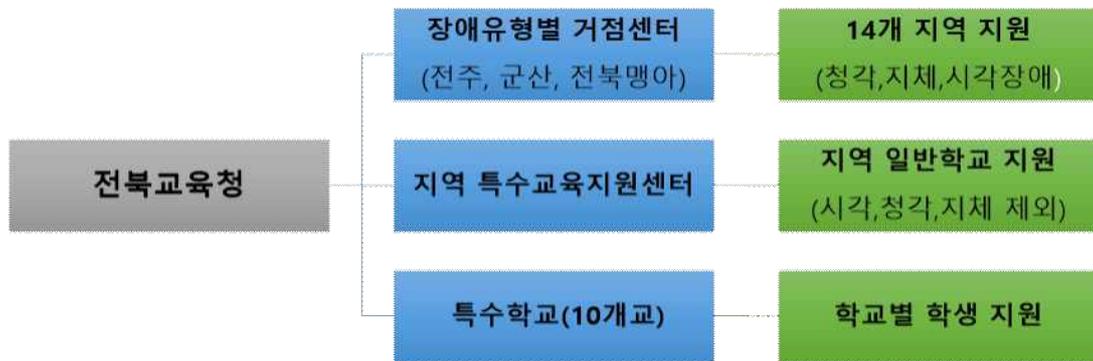
- 1) 가족지원, 치료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을 통한 2차 장애 예방
- 2)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 개선을 통한 사회 적응력 향상

#### 7-1 가족지원

- 1) 부모교육, 가족상담, 양육상담, 가족캠프, 형제자매지원 등 가족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계획 수립 및 운영
- 2) 자녀 이해 및 자녀교육 역량 강화, 가족 간 화합 및 유대감 증진, 학교와 가정과의 협력 증진 등을 위한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
- 3)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연수 및 상담, 협의회 등을 통해 만족도 향상 노력
- 4) 지역 내 유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7-2 보조공학기기 및 교재교구 대여

- 1) 일반학교 재학 중인 유·초·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
- 2) 보조공학기기 및 교재교구 대여 기간, 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 수립 후 시행(홈페이지 및 공문 등을 통하여 보유 물품 안내)
- 3) 물품 구입을 위해 학생, 보호자 및 교사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지원 대상자 및 기기 선정은 자체 심사를 거쳐 선정
- 4) 학교 교육활동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를 우선으로 지원하며, 장애 유형별 거점센터의 경우 도내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지원
- 5) 보조공학기기 구입 시 반드시 K-에듀파인 물품으로 등록하고 운영 시 관리(대여대장, 이관(관리전환), 분실, 불용처리 등) 절차를 준수
- 6) 기기 사용 기간 중 수리 및 보수 등의 소요경비는 기기 사용자가 부담
- 7) 원활한 기기 사용을 위해 교사, 학생,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연수) 실시



### 7-3 치료지원

- 1) 치료지원 대상은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지원 필요한 학생
  -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 재학생(전공과 제외)
  -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학교 소속 만 3세 미만 영아(재택보육 영아 포함)
  - 대안 교육 위탁 교육기관에 재학생
- 2) 치료지원 영역은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청능훈련, 보행훈련 및 기타 (심리운동, 음악치료, 미술치료, 감각통합) 6개 영역임
- 3) 치료지원비는 월 최대 17만원을 지원하며 주 1회 제공을 권장함(월 4회)
- 4) 센터는 치료지원 제공기관 모니터링을 통해 운영을 주기적으로 점검
- 5) 대상 학생 기본 정보 등을 점검하여 현행화하며 치료지원비 결제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매월 결제금액 및 결제 내역 등을 확인
- 6) 그 외 사항은 「특수교육대상학생 관련 서비스 업무 길라잡이」 및 2025 치료지원 운영계획에 의함

#### 안내 및 협조사항

- 【참고】 특수교육대상학생 관련 서비스 업무 길라잡이(전북, 2024)
- 【참고】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 길라잡이 84쪽」 (전북, 2024)
- 【참고】 2025 전북 치료지원 운영계획
- 【제출】 2025 치료지원 제공기관 모니터링점검표 제출(25.7.25.)
- 상반기에 모든 제공기관 대상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내실 있는 운영 지원 (하반기는 추가 모니터링 중심)
- 보조공학기기 목록 및 대여 방법 등을 관내 학교에 안내
- 상시 보조공학기기 운영 관리 점검(센터는 컨설팅과 동시 진행)

### 가. 운영목적

- 1)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학교(성)폭력 예방을 통한 인권 친화적 교육지원
- 2) 장애학생 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 나. 운영방침

- 1)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월 2회(교) 이상의 정기현장지원과 사안 발생 시 특별지원 실시
  - 정기지원: 일반학교 매월 최소 2회(교) 이상, 특수학교 연 2회 이상 권장
  - 특별지원: 장애학생 인권 침해 사안 발생 시
- 2)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은 센터장(겸임 가능), 담당 장학사, 특수교육지원센터 팀장, 특수학교(급) 교장(감), 경찰서 성폭력 담당자, 장애학생 보호자, 성교육전문가, 상담전문가 등을 필수인원으로 하여 8명 이상으로 구성(구체적 역할 명시)
- 3)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역할
  -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정기현장지원 및 특별지원
  - 사안 발생 시, 특별지원을 통한 피해학생 보호 및 가·피해학생 지원
  - 더봄학생 선정 및 관리
  - 장애학생 인권보호 관련 학생 교육 지원(인권교육 및 성교육 강화)
  - 장애학생 인권보호 관련 교직원 및 보호자 등 연수 지원
  - 장애학생 인권보호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 지역 내 유관기관 간 연계를 통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 4) 장애학생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관리체계 확립 및 상황 발생 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으로 장애학생 피해 최소화 노력 강구
  - 상황 발생 시 우선 경찰에 신고하고, 관내 관련기관 및 Wee센터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장애학생 피해 최소화와 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 강구
- 5) 매년 실시하는 장애학생 인권실태조사를 지원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사안 조사가 필요할 경우 추가 조사 실시 지원 및 후속 조치 방안 마련 협조

## 6) 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위기 가정 및 생활 시설 방문 등 실시 권장

### ※ 2025년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개요

- 근거: 「장특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목적: 장애학생 인권침해 관련 경험 및 인식 등 조사, 인권침해 예방·대응 지원
- 대상: 특수교육대상자(초등학교 4학년~전공과) 및 보호자\*, 교원\*\*
  - \* 조사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한 경우에 한함
  - \*\* 조사참여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있는 모든 학교의 교원(교당 1명)
- 방법: 온라인조사(6월~7월), 대면조사\*(9월~10월)
  - \* 온라인 조사에서 학교폭력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고, 대면조사 희망한 경우
- 내용: 2024년 2학기~2025년 1학기 동안 학교생활 내 인권침해 경험 및 인식 등
- 시행: 17개 시도 교육감(주관: 인천광역시교육청)

### 안내 및 협조사항

- 【참고】 2025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매뉴얼(울산교육청 주관)
- 【참고】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 길라잡이 3쪽」 (전북, 2024)
- 【제출】 2025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 및 운영계획 제출(25.3.28.(금)까지)
- 【신청】 2025년도 국가시책 특별교부금(특수교육) 신청 (25.2월중)
- 2025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성과계획서 성과지표 ‘특수교육대상학생 인권보호 강화’  
인권지원단 현장지원 실시율 : (더봄학생 현장지원 학교 수/더봄학생 재학 학교 수)×100  
인권보호 프로그램 참여율 : (참여학생 수/ 전체 특수교육대상학생 수)×100

## 가. 운영목적

- 1)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행동중재 지원을 통한 바람직한 행동 형성
- 2) 장애특성을 고려한 행동중재 및 학습환경 조성으로 학습권 보호

## 나. 운영방침

- 1) 특수교육지원센터 행동중재지원단 구성을 통해 일반학교 행동중재 지원
- 2) 지역청 여건에 따라 통합교육지원단과 병행 운영이 가능하나, 업무 담당자는 지정하여 운영
- 3) 관내 행동중재 전문가과정 직무연수 이수자, 지역 내 전문가로 지원단 구성
- 4) 센터 내 여건에 따라 행동중재 전담교사 배치
- 5) 지역 내 치료실, 의료기관, 상담기관 등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행동중재 지원
- 6) 행동중재 거점센터에서는 위기학생 대상 개별 지원 프로그램 운영
- 7) 도교육청 행동중재지원단 컨설팅 및 전문가 연계 지원(연중)
- 8) 교사 및 학부모 연수를 실시하여 가정과의 연계 지도 강화

##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동중재지원단

- 일반학교 등에 배치된 장애학생 대한 행동중재 지원을 위해 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구성
- 행동중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학교로부터 요청을 받아 운영
- 행동중재 전문가 컨설팅, 전문가(기관) 인력풀 공유, 개별 학생행동중재계획 수립 및 실행 자문 등

## 안내 및 협조사항

- 【신청】 2025년도 국가시책 특별교부금(특수교육) 신청- 익산 (24.2월중)
- 지역청별 2025 장애학생 행동중재 지원계획 수립 및 제출(특수교육운영계획에 포함 가능)

## 10 장애유형별 거점 센터

### 가. 운영목적

- 1) 장애유형별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맞는 특수교육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2) 시각·청각·지체장애 학생의 학습권 확대 및 통합교육 지원 강화

### 나. 운영방침

- 1)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시각·청각·지체장애 거점센터를 지정하고 운영
  - 시각장애: 전북맹아학교
  - 청각장애: 전주 특수교육지원센터
  - 지체장애: 군산 특수교육지원센터
- 2)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시각·청각·지체장애 특수교육대상학생 우선 지원
- 3) 학생과 학부모, 학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 4) 보조공학기기 목록, 수요조사, 대여 방법 등을 학년 초 안내(누리집, 공문 등)
- 5)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관련 전문가와 연계하여 컨설팅, 교사와 학부모 연수, 교수-학습자료 지원, 보조공학기지원 및 기기 활용 연수 등의 사업 추진
- 6) 그 외 사항은 각 거점센터별 운영계획에 의거하여 운영

#### ※ 사업 내용

- ① 학생지원 공통: 교수학습자료 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및 기기활용 교육
  - 시각장애: 시기능평가, 점자교육, 보행훈련지원, 전환교육 등
  - 청각장애: 속기지원(문자변환기기 등), 수어교육 및 통역, 전환교육 등
  - 지체장애: 진로상담, 전환교육 등
- ② 특수 및 통합학급 교사 연수: 장애이해 및 지도역량 강화 연수, 기기활용연수 등
- ③ 학부모교육: 자녀양육 교육, 진로 및 진학 상담 등
- ④ 통합교육 지원: 통합학급 대상 장애이해교육, 장애유형별 이해자료 보급
- ⑤ 유관기관 연계: 전북특별자치도보조기기센터, 수어통역센터, 장애인복지관 등 전문강사 지원, 프로그램 연계 참여 등

#### 안내 및 협조사항

- 【제출】 2025 장애영역별 운영계획서 제출(25.2.28(금)까지)
- 【신청】 2025년도 국가시책 특별교부금(특수교육) 신청 (25.2월중)
- 보조공학기기 목록(운영계획서에 포함), 운영 관리 점검(상반기)

## 11 진로직업교육

### 가. 운영목적

- 1) 체계적인 진로직업교육 지원을 통한 진로탐색 및 직업재활 도모
- 2) 지역사회 산업체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진로체험 확대

### 나. 운영방침

- 1)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진로직업교육 협의체를 구성하고 진로직업특수교육 지원센터(전주, 군산, 익산)와 협력하여 운영
- 2) 직업훈련기관을 활용하여 직업교육 프로그램은 운영하고, 진로직업 관련 정보 안내 및 홍보
- 3) 지역 내 다양한 진로체험처 발굴 및 진로체험 기회 확대
- 4)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진로직업교육 관련 연수, 학습공동체(연수회) 운영, 산업체 견학, 대학 탐방 등을 통해 진로직업교육 역량 강화 및 현장 지원
- 5)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로직업 세미나, 산업체 견학, 취업 컨설팅 등 다양한 형태의 연수 운영

#### ※ 활동 예시

- 체험형: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체험프로그램, 실무교육(바리스타, 제과제빵 등) 보호작업장, 방학 중 체험 프로그램
- 견학형: 발달장애인훈련센터 견학프로그램,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 산업체 견학, 대학교 입학설명회 등
- 강의형: 구직역량강화 프로그램(이미지메이킹, 스타일링,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모의면접훈련 등), 경제교육, 대학생 멘토-멘티 프로그램 등
- 현장실습: 산업체 직무체험형 현장실습, 취업 연계 현장실습 등

#### 안내 및 협조사항

- 【신청】 2025년도 국가시책 특별교부금(특수교육) 신청 (25.2월중)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계획 내 진로직업 계획 포함하여 수립
- 진로직업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진로직업교육 교사 역량 강화 연수 지원

## 12 진학 상담 및 전환교육

### 가. 운영목적

-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진로상담 및 전환교육 프로그램
- 2) 특수교육대상학생 상급학교 진학 지원 및 학교 적응력 향상 지원

### 나. 운영방침

- 1) 생애주기별 장애 특성별 특성을 고려한 개별 진학상담, 진학설명회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운영
- 2)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상급학교 진학 시 적절한 배치를 위한 정보제공 및 상담 진행(유치원→초등학교, 초등학교→중학교, 중학교→고등학교 전 과정에 걸쳐 지원이 제공되도록 함)
- 3) 장애영아 대상 전환교육은 보호자 연수, 입학설명회, 유치원 방문 지원 등 IFSP와 연계하여 지원
- 4)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초등학교 입학적응을 위해 유아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및 학부모 교육을 실시(전년도 말 ~ 2월까지)
- 5) 중등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경우 진로직업교육과 연계하여 지원
- 6) 학교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수시 진학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방문 컨설팅 등을 통해 전환교육 관련 정보 제공
- 7) 초등학교 진학 배치 완료 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배치 현황 안내 공문 발송

### 안내 및 협조사항

- 유아-초등, 초등-중등과정별 맞춤형 진로진학 정보 제공
- 관내 학교(급)와의 협력을 통해 유치원 및 학교 방문형 전환교육 확대

2025  
전북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계획



# 행정사항





**1. 2025 특수교육지원센터 기본 현황 제출 <서식 1 참고>**

가. 기한: 2025. 2. 28.(금) 까지

나. 자료: 2025 특수교육지원센터 기본 현황(서식1)

다. 방법: 자료집계로 제출

**2. 2025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계획 제출**

가. 기한: 2025. 2. 28.(금)까지

나. 자료: 2025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계획

다. 방법: 업무관리(한글파일)로 제출 (추후 책자 2권 제출)

**3. 2025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실적 제출<서식 2 참고>**

가. 기한: 2025. 7월말, 11월 말

나. 자료: 2025 상반기(하반기)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실적

다. 방법: 업무관리로 제출

**4. 2025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점검표 및 컨설팅 신청서 제출<서식 3, 4 참고>**

가. 기한: 2025. 4월, 9월 중

나. 자료: 2025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점검표

찾아가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컨설팅 신청서

다. 방법: 업무관리로 제출

**5. 2025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성과 보고회(추후 안내)**

가. 기한: 2025. 12. 12.(금)

나. 자료: 2025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실적, 우수사례

다. 방법: 업무관리로 제출

## 2

##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원 연간 행사 일정

## 1. 역량 강화 연수 일정

순	구분	일시	내용	비고
1	설명회	25.1.22.(수)	2025년 운영계획 설명회	
2	연수	25.3.12.(수) ~ 3.14.(금)	상반기 업무 담당자 연수	
3	연수	25.5.2.(금)	인권지원단 위원 및 담당자 연수	
4	워크숍	25.5.8.(목) ~ 5.9.(금)	특수교육지원센터 워크숍	
5	연수	25.9.10.(수) ~ 9.12.(금)	하반기 업무 담당자 연수	
6	보고회	25.12.12.(금)	2025년 운영 성과 보고회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2. 현장 지원 컨설팅 일정

순	구분	일시	내용	비고
1	상반기	25. 4월중(2주간)	찾아가는 현장 방문 지원 컨설팅	전수
2	하반기	25. 9월중(2주간)	찾아가는 현장 방문 지원 컨설팅	자율

※ 요청 시, 상시 컨설팅 운영

## 3

## 특수교육 관련 연간 행사 일정

순	구분	일시	내용	비고
1	조사	25.4.1.(화) ~ 4.11.(금)	2025년 특수교육통계 조사	
2	교육	25.4.7.(월) ~ 4.18.(금)	더 특별한 장애공감교육 운영	
3	연수	25.4.24.(목)	통합학급 담당교사 역량강화 연수	
4	행사	25.5.13.(화) ~ 5.16(금)	제1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5	행사	25.5.19.(월) ~ 5.23(금)	특수교육대상학생 해외문화체험학습(상반기)	
6	조사	25.5.26.(월) ~ 6.6.(금)	2025년 특수교육연차보고서 조사	
7	행사	25.6.3.(화) ~ 6.4(수)	2025년 전북 장애학생 e-페스티벌	
8	연수	25.7.22.(화)	장애 영유아교육 담당교원 연수	
9	워크숍	25.8.7.(목) ~ 8.8(금)	2025년 특수교육지원인력 워크숍	
10	전형	25.10.24.(금)	특수학교 전공과 입학(면접) 전형	
11	행사	25.10.27.(월) ~ 10.31(금)	특수교육대상학생 해외문화체험학습(하반기)	
12	보고회	25.12.2.(화)	2025년 통합교육 운영성과 보고회	

# 서식 1

## 2025 특수교육지원센터 기본 현황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 1. 인력 현황

구분	특수교사				전담인력			합 계	비 고
	유치원	초등	중등	소계	운영강사	치료사	특수행정 실무사		
인원									

### 2. 일람표

구분	성명	현 기관 발령일	연락처	담당업무	비고
교사 (유,초,중)	김○○	2025. 3. 1	사) 000-0000 핸) 010-1234-5678	진단평가	전입
교사	김○○	2025. 3. 1			신규
교사	김○○	2025. 3. 1			기간제
교사	김○○	2025. 3. 1			팀장
운영강사					
특수행정실무사					
치료사					언어

※ 담당업무는 업무분장표에 있는 모든 업무 작성

### 3. 시설 현황

총실수	총면적 (㎡)	특수교육지원센터 시설 현황							
		사무실	상담실	연수실	영아교실	직업교육실	미래교육실	진단·평가실	기타
9실		1	2	1	1	2	1	1	

**서식 2**

**2025 특수교육지원센터 상반기(하반기) 운영실적**

지역		담당자 성명	
우수 사업 (3개 이상 기술)			
월별 주요 사업 운영 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예정)			
여름방학 중 운영 계획			
일정			
내용	-		
지원 필요 사항			

**서식 3**

**2025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점검표**

기관명: ○○특수교육지원센터

작성자: 직위

성명

영역	점검항목				비고
	점검 내용	현황	미실시 사유	질의 사항	
1. 순회교육	-계획 수립 여부	(○, ×)			
	-예산편성 여부 및 금액				
2. 통합교육지원	-통합교육지원단 구성 여부	(○, ×)			
	-컨설팅 공문 안내 여부	(○, ×)			
	-컨설팅 횟수				
	-통합교육 관련 연수 내용				
3. 조기발견, 영유아교육지원	-운영계획서, 운영 현황				
4. 진단평가	-진단평가팀구성 및 연수여부	(○, ×)			
	-진단평가팀 연수 내용				
5. 정보관리 및 홍보	-학생정보관리방법				
	-홈페이지 홍보 운영 여부	(○, ×)			
	-그 외 홍보 방법				
6. 교수학습 활동지원					
- 학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내용	(자세히)			
- 교사연수	-특수교사 대상 연수 내용				
	-통합학급교사(관리자포함) 연수 여부	(○, ×)			
	- 관리자 연수	(○, ×)			
- 그 외 연수	-사회복무요원 연수 여부	(○, ×)			
	-특수교육지도사 연수 여부	(○, ×)			
7. 관련 서비스					
1) 가족지원	-가족지원사업 내용				
	-학부모교육 내용				
2) 보조공학 기기지원	-대여 안내 관련 공문 여부	(○, ×)			
	-보조공학기기 보유 목록				
3) 치료지원	-영역변경 및 매뉴얼준수 여부	(○, ×)			

영역	점검항목				비고
	점검 내용	현황	미실시 사유	질의 사항	
	-현장점검 모니터링 실시 현황				
8. 인권지원단 운영	-더봄학생 대상 정기현장지원 횟수				
	-더봄 학생 지원계획 내용				
	-인권관련 교육, 연수내용				
9. 진로직업교육	-운영 내용	(자세히)			
10. 진학상담 및 전환교육	-진학관련 상담운영내용				
11. 선정배치	-특운위 위원 대상 연수 내용				
12. 미래교육	-운영 프로그램 내용				
13. 행동중재	-운영 내용				
14. 특화 사업	※ 특화사업의 경우 기 제출한 현황 미기록(기 제출한 계획서 준비) 운영 점검표에는 질의사항 중심으로 기록 장애유형별 거점, 행동중재 거점, 문화예술 거점, 건강체육 거점, 직업실기, 현장실습, 진로탐색				
장애유형별 거점					
행동중재 거점					
문화예술 거점					
건강체육 거점					
직업실기					
현장실습					
진로탐색					

**서식 4**

**2025 찾아가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컨설팅 신청서**

지역		담당자 성명	
컨설팅 희망 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순위: 2025. 00. 00.(요일) 00:00</li> <li>· 2순위: 2025. 00. 00.(0) 00:00</li> <li>· 3순위: 2025. 00. 00.(0) 00:00</li> <li>※ 오전, 오후 모두 가능하며, 일정은 추후 조정될 수 있음</li> <li>※ 특별히 불가능한 일정이 있을 시 추가기록 바람</li> </ul>		
컨설팅 참석자	장학사 및 팀장은 필수 참석		
컨설팅 요청 내용 (자세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시) 2025년 예산편성</li> <li>○ (예시) 특수교사 전문성 신장 연수 주제 및 강사 인력풀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및 행동증재지원단 운영 방안</li> </ul>		
기타 요청 사항			

2025  
전북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계획



부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약칭:특수교육법)

[시행 2023. 4. 19.] [법률 제18992호, 2022. 10. 18., 일부개정]

교육부(특수교육정책과) 044-203-6563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2. 3. 21., 2021. 3. 23., 2021. 12. 28.>

1.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2.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지원인력배치·보조공학기기 지원·학습보조기기지원·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한다.
3. “특수교육대상자”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4. “특수교육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
5.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6.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7. “개별화교육”이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교육방법·교육내용·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8. “순회교육”이란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이 각급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9. “진로 및 직업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에서 사회 등으로의 원활한 이동을 위하여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직업재활훈련·자립생활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10. “특수교육기관”이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한다.
11. “특수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한다.
12.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의무교육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제24조에 따른 전공과와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 ②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을 하지 못하거나, 제19조제3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할 때의 그 학년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지 아니하고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연수(年數)를 더한 연령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개정 2021. 3. 23.>
- ③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4조(차별의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 기회의 부여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1. 3. 23.>

-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 2. 21.>
  1. 제28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2.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
  3.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4.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수험편의의 내용을 조사·확인하기 위한 경우 외에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등 입학전형 과정에서의 차별
  5. 입학·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
  6. 학생 생활지도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차별

##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29., 2017. 12. 19.>

1.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종합계획의 수립
  2.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3.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지도
  4. 특수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제의 연구·개선
  5.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 연수
  6. 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의 수립
  7. 특수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및 시설·설비의 확충·정비
  8.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
  9.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방안의 강구
  10.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방안의 강구
  11.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방안의 강구
  12. 그 밖에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제1항의 업무 추진이 부진하거나 제2항의 예산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

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에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0. 6. 4., 2013. 3. 23., 2016. 2. 3.>

**제6조(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위탁교육)**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를 고려하여 특수교육기관을 지역별 및 장애영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또는 공립의 특수교육기관이 부족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특수교육기관의 교육여건이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의 수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위탁교육·제3항에 따른 지원 또는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취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는 해당 특수교육기관의 교육활동이 매우 불량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맞지 아니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에 현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취학하고 있는 교육기관 외의 교육기관에 취학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신청 접수일부부터 30일 이내에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열어 신청인·해당 학교의 장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변경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교원의 자질향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 과정에는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의 존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13. 12. 30.>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12. 30.>

**제9조(특수교육대상자의 권리와 의무의 안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알게 되거나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과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 및 보호자의 권리·책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 3. 23.>

**제10조(특수교육운영위원회)** ① 제5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장 소속으로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각각 둔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② 제1항에 따른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및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규칙으로 각각 정한다.

다.<개정 2019. 12. 10.>

**제11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시·도 교육청 및 모든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0.>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시·도 교육청, 하급교육행정기관이나 특수학교,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 초·중·고등학교 또는 관할 지역의 관공서(장애인복지관을 포함한다) 등 특수교육대상자를 비롯한 지역주민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0.>

③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9. 12. 10.>

**제12조(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 ① 교육부장관은 특수교육의 주요 현황과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0., 2021. 12. 28.>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19. 12. 10.>

**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계획·특수교육교원의 수급계획 등 특수교육정책의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2. 22.>

② 교육부장관은 대학에 취학하는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2. 22., 2022. 10. 18.>

③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9. 12. 10.>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대학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신설 2015. 12. 22., 2019. 12. 10.>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내용과 방법,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5. 12. 22., 2019. 12. 10.>

**제13조의2(인권침해 사건 신고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신속한 신고 및 발견을 위하여 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 조사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10.]

### 제3장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학교배치 등

**제14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영유아의 장애 및 장애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해당 지역 내 보건소와 병원 또는 의원(醫院)에서 선별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선별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와 병·의원 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한 때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진단·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학교의 장이 진단·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진단·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즉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회부하여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그 진단·평가의 결과를 해당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선별검사의 절차와 내용,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의 사전 동의 절차 및 제4항에 따른 통보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개정 2016. 2. 3., 2021. 3. 23., 2021. 12. 28.>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적장애
4. 지체장애
5. 정서·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제16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①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진단·평가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를 통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제공할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부모 등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교육지원 내용에는 특수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의 과정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의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개정 2021. 3. 23.>

1.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2.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3. 특수학교
-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를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각급학교 등에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도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을 말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를 요구받은 교육감 또는 국립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개정 2021. 3. 23.>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장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제18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①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의 보호자는 조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교육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를 특수학교의 유치원과정, 영아학급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배치된 장애영아가 의료기관, 복지시설 또는 가정 등에 있을 경우에는 특수교육 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하여금 순회교육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영아를 위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설비를 정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장애영아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보호자의 의무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는 그 보호하는 자녀에 대하여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의 기회를 보호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 ②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다만,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1. 6. 7.>
- ③ 제2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 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학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 3. 23.>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① 특수교육기관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과정의 교육과정은 장애의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고, 영아교육과정과 전공과의 교육

과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9. 12. 10., 2021. 7. 20.>

- ② 특수교육기관의 장 및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장애유형과 정도, 연령, 현재 및 미래의 교육요구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내용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0.>
- ③ 특수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통합교육)**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는 경우 통합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 3. 23.>

- ② 제17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일반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조정, 지원인력의 배치, 학습보조기기의 지원,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28.>
- ③ 일반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제22조(개별화교육)** ①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한다.

- ②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 마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③ 특수교육대상자가 다른 학교로 전학할 경우 또는 상급학교로 진학할 경우에는 전출학교는 전입학교에 개별화교육계획을 14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 ④ 특수교육교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업무를 지원하고 조정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의 수립·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23조(진로 및 직업교육의 지원)** ① 중학교 과정 이상의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 및 요구에 따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평가·직업교육·고용지원·사후관리 등의 직업재활훈련 및 일상생활적응훈련·사회적응훈련 등의 자립생활훈련을 실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 ② 중학교 과정 이상의 각급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진로 및 직업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③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효과적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24조(전공과의 설치·운영)** ① 특수교육기관에는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업연한 1년 이상의 전공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지역별 또는 장애유형별로 전공과를 설치할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③ 전공과를 설치한 각급학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공과의 시설·설비 기준, 전공과의 운영 및 담당 인력의 배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순회교육 등)**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을 배치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 10. 20.>
- ③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 10. 20.>
- ④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순회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학급을 설치·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담당 교원을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며, 학생들이 원만히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적·정서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신설 2015. 12. 22., 2021. 12. 28.>
-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라 학급이 설치·운영 중인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신설 2015. 12. 22., 2021. 12. 28.>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회교육의 수업일수 등 순회교육의 운영과 제2항에 따른 원격수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5. 12. 22., 2020. 10. 20.>

**제26조(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 ① 「유아교육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에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되는 경우 해당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방과후 과정 운영을 담당할 인력을 학급당 1인 이상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개정 2012. 3. 21.>

- ② 제1항에 따른 방과후 과정 담당 인력의 자격기준,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 3. 21.>

[제목개정 2012. 3. 21.]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①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유치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2. 초등학교·중학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6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3.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7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7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 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으며, 순회교육의 경우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8.>
- ③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가족상담, 부모교육 등 가족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0.>

-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경우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치료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 3. 23., 2021. 12. 28.>

- ③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28.>
- ④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장애인용 각종 교구, 각종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의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⑤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편의를 위하여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통학 지원인력의 배치 등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28.>
- ⑥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기숙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특수학교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생활지도원을 두는 외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두어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4. 5.>
- ⑦ 제6항의 생활지도원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배치기준은 국립학교의 경우 교육부령으로, 공립 및 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시·도 교육규칙으로 각각 정한다.<신설 2013. 4. 5.>
- ⑧ 각급학교의 장은 각급학교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3. 4. 5.>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4. 5.>

## 제5장 고등교육

**제29조(특별지원위원회)** ①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특별지원위원회(이하 “특별지원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2. 10. 18.>

- 1.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
  - 2.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결정
  - 3.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은 장애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계 교직원 또는 재학 중인 장애학생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의 장이 임명한다.<신설 2022. 10. 18.>
- ③ 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2. 10. 18.>

**제30조(장애학생지원센터)** ①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학생 수가 일정 인원 이하인 소규모 대학 등은 장애학생 지원 부서를 둬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1. 3. 23., 2022. 10. 18.>

- ② 장애학생지원센터(제1항에 따라 장애학생 지원부서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21. 3. 23., 2021. 12. 28., 2022. 10. 18.>
- 1.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 2. 제31조에서 정하는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 2의2.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대학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 3. 교직원·지원인력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 4. 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대학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장애인 인권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신설 2022. 10. 18.>

④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2. 10. 18.>

**제30조의2(개인별 교육지원계획)** ①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특별지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의 보고사항을 반영하여 매 학기마다 장애학생에 대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을 작성하여 대학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대학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에 따라 장애학생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 조사 및 교육지원계획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0. 18.]

**제31조(편의제공 등)** ①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28., 2022. 10. 18.>

1.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
2. 교육지원인력 배치 등의 인적 지원
3. 취학편의 지원
4. 정보접근 지원
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지원

6. 그 밖에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것으로서 특별지원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②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수험생의 수험의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수단 중 수험편의에 필요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15. 12. 22.>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22.>

④ 대학의 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정보접근 지원을 위하여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을 위한 화면해설, 폐쇄자막 또는 수어통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21. 12. 28.>

**제32조(학칙 등의 작성)** 대학의 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장애학생의 지원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학칙에 규정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28.>

1. 장애학생의 학습지원에 관한 사항
2. 장애학생의 입학시험을 포함한 입학전형 관리에 관한 사항
3.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의 정보접근 지원을 위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3조(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① 교육부장관은 대학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이하 “고등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고등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학생 고등교육 관련 연구·분석
2.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 관련 자료 개발·보급
3. 장애학생의 진로·취업 지원
4. 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교직원 등 연수 지원
5. 제13조에 따른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 운영 및 컨설팅

- 6. 제30조에 따른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 7. 그 밖에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등교육센터의 설치·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고등교육센터의 설치·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0. 18.]

**제34조 삭제**<2016. 5. 29.>

## 제6장 보칙 및 벌칙

**제35조(대학의 심사청구 등)** ①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대학에 이 법에 따른 각종 지원조치를 제공할 것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 ②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2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대학의 결정(부작위 및 거부를 포함한다)과 이 법을 위반하는 대학의 장 또는 교직원의 행위에 대하여 특별지원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④ 특별지원위원회는 제3항의 심사청구에 관하여 2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⑤ 제3항에 따른 심사에서는 청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⑥ 대학의 장, 교직원, 그 밖의 관계자는 제4항에 따른 결정에 따라야 한다.
- ⑦ 그 밖에 특별지원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심사청구)** ①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장, 교육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1.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 2. 제16조제3항에 따른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사항
- 3. 제17조제1항에 따른 학교에의 배치
- 4. 제4조를 위반하는 부당한 차별
- ②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이에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가 3개월 이상 학교생활에의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개정 2021. 3. 23.>
- ③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정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심사에서는 청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⑤ 교육장, 교육감, 각급학교의 장, 그 밖의 관계자는 제3항에 따른 결정에 따라야 한다.
- ⑥ 제3항에서 정하는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② 이 법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애를 이유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한 교육기관의 장
2. 제4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수험편의의 내용의 확인과 관계없는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한 자

[본조신설 2016. 5. 29.]

[종전 제38조는 제38조의2로 이동 <2016. 5. 29.>]

**제3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8. 2. 21.>

1. 삭제<2016. 5. 29.>
2.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와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보호자 참여에 있어서 차별한 자
3. 삭제<2016. 5. 29.>
4. 제4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입학·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한 자
5. 제4조제2항제6호를 위반하여 학생 생활지도에 있어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차별을 한 자

[제38조에서 이동 <2016. 5. 29.>]

**부칙** <법률 제18992호, 2022. 10. 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 약칭: 특수교육법 시행령 )

[시행 2023. 4. 19.] [대통령령 제33406호, 2023. 4. 18., 일부개정]

교육부(특수교육정책과) 044-203-6563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교육의 실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법률 제 8483호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례로 각각 실시한다.

1. 2010학년도: 만 5세 이상 유치원 과정 및 고등학교 과정
2. 2011학년도: 만 4세 이상 유치원 과정
3. 2012학년도: 만 3세 이상 유치원 과정

**제3조(의무교육의 비용 등)**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및 학교급식비로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비용 외에 학교운영 지원비, 통학비, 현장·체험학습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4조(위탁교육)** ① 교육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사립(私立) 특수교육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관할 구역에 있는 사립 특수교육기관의 교육여건, 교육 가능한 인원, 교육기간 등에 관하여 그 특수교육기관의 장(특수학급이 설립된 사립학교의 장을 포함한다)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2. 6. 28.>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탁한 사립 특수교육기관에 대하여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과 같은 수준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운영비, 시설비, 실험실습비, 진로 및 직업교육비, 교직원 인건비, 그 밖에 특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 외에 위탁교육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교원의 자질 향상)**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통합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특수교육교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연수를 받게 하는 경우 특수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통합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통합교육을 지원하는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는 특수교육과 관련된 직무연수 과정을, 특수교육교원에 대하여는 일반교과 교육에 관한 직무연수 과정을 개설·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6조(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3. 23.>

③ 당연직위원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부처의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0. 3. 15., 2010. 7.

12.,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특수교육교원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7년 이상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거나 교육하였던 사람
2. 특수교육대상자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로서 특수교육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특수교육에 관한 학문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⑦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중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에 직원의 출석·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의2(위촉위원의 해촉)**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 12. 31.]

**제7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담당 업무를 전담하는 특수교육 분야의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지역의 지리적 특성 및 특수교육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의 하급 교육행정기관에 2 이상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특수교육지원센터는 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과의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 과정에서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 또는 학생이 이전에 의료적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료적 진단을 보건소, 병원 또는 의원에 의뢰하여야 한다.

⑥ 교육감은 제5항에 따라 의료적 진단을 보건소, 병원 또는 의원에 의뢰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1. 29.>

1. 특수교육대상자의 성·연령·장애유형·장애정도별 현황
2. 특수교육기관 및 그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
3.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현황
4. 특수교육 지원을 위한 행정조직 및 지원 현황
5. 특수교육재정의 확보·분배·활용 현황

6.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성과 및 학교 졸업 후의 생활상태
7. 삭제 <2021. 4. 20.>
8.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보호자, 특수교육에 관한 전문가 등 특수교육 관련자의 특수교육 지원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 사항
  -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 1. 29.>
    1. 법 제29조에 따른 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 현황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현황
    3.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 및 장애수험생의 수험 편의를 위한 수단의 제공 현황
    4.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학생 지원 등에 관한 학칙의 규정 현황
    5.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심사청구의 운영 현황
  - 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 12. 8.>
    1.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의 유형별 현황
    2. 인권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특수교육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현황
    3. 인권침해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조치 현황
    4. 그 밖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 ④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시행하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조사항목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전수조사(全數調査)의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9., 2020. 12. 8.>
  - ⑤ 교육감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다른 교육감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필요하면 해당 조사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8.>

**제8조의2(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①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는 서면조사와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② 교육감은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의 목적과 항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미리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③ 교육감은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 ④ 교육감은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를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8.]

### 제3장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학교 배치 등

**제9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매년 1회 이상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홍보를 하여야 한다.

-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관할 구역의 어린이집·유치원 및 학교의 영유아 또는 학생(이하 “영유아 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대상으로 수시로 선별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1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8., 2012. 8. 31.>
- ③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선별검사를 한 결과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병원 또는 의원에서 영유아 등에 대한 장애 진단을 받도록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상담을 하여야 한다.
- ④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선별검사를 받은 영유아 등의 보호자가 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방기를 요청할 경우 영유아 등의 보호자에게 영유아 등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또는 진

단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영유아 등이 특수교육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진단·평가를 하여야 한다.

⑤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진단·평가한 결과 영유아 등에게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그 내용과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절차를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별검사 및 진단·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선별검사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3. 3. 23.>

**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법 제15조제1항제11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애가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2. 6. 28.]

**제11조(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등)**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학교에 배치할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각각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배치한 경우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육교원에게 그 학교를 방문하여 학습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을 추가·변경 또는 종료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를 재배치할 필요가 있으면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교육장 및 교육감에게 그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및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배치에 대한 이의)**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해당 특수학교가 교육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종류와 배치를 요구받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종류가 달라 효율적인 교육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제4장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제13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①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이하 이 조에서 “장애영아”라 한다) 교육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하되, 장애영아의 건강 상태 및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을 받는 영아학급 등의 교원 배치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장애영아를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하여 교육을 하는 경우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별표에 따른 보통교실을 그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갖추어야 한다.

④ 장애영아 담당 교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3.>

**제14조(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를 유예받거나 면제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회의 심의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의 등·하교 가능성, 순회교육 실시 가능성 및 보호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이 경우 유예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유예기간을 연장

하려는 경우에도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보호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취학을 신청하고, 그 신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유치원 의무교육을 받는 것으로 보는 어린이집의 요건)**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이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2. 6. 28.]

**제16조(통합교육을 위한 시설·설비 등)** ① 일반학교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수 및 그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44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학급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일반학교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정도 및 교육활동 등에 맞도록 정보 접근을 위한 기기, 의사소통을 위한 보완·대체기구 등의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제17조(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등)**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준교사·실기교사의 자격(각각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과정을 담당할 수 있는 자격으로 한정한다)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10. 30.>

1.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직업재활에 관한 전공을 이수한 사람
2. 진로 및 직업교육과 관련한 국가자격증 또는 민간자격증 소지자
3. 진로 및 직업교육과 관련한 직무연수를 이수한 사람

**제18조(진로 및 직업교육을 위한 시설 등)** ① 중학교 과정 이상 각급 학교의 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진로 및 직업교육을 위하여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중학교 과정 이상 특수학교의 장은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5.>

②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부 등 해당 지역의 장애인 고용 관련 기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산업체 등 관련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진로 및 직업 교육을 위한 교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 및 직업 교육에 필요한 인력과 경비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5.>

**제19조(전공과의 설치·운영)**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특수교육기관의 장은 66제곱미터 이상의 전공과 전용 교실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시설·설비의 기준은 교육감이 정한다.

② 전공과를 설치한 교육기관의 장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장실습이 포함된 직업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전공과의 수업 연한과 학생의 선발 방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전공과를 설치한 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④ 전공과를 전담할 인력은 전공과를 설치한 특수교육기관의 고등학교 과정과 같은 수준으로 배치한다.

**제20조(순회교육의 운영 등)** ① 교육장이나 교육감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순회교육을 하기 위하여 순회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순회교육계획을 작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순회교육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하여 각급학교의 장이 정하되, 순회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상태와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③ 삭제 <2016. 6. 21.>

**제20조의2(원격수업의 운영)**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원격수업(이하 “원격수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원격수업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원격수업을 위하여 점자 및 자막 자료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따른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4. 20.]

**제20조의3(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급을 설치·운영 중인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급을 설치·운영 중인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1. 학급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2. 학급 담당 교원 또는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지원
3. 순회교육에 필요한 교재·교구 지원
4. 그 밖에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지원

[본조신설 2022. 6. 28.]

**제21조(유치원 과정의 방과후 과정 담당 인력의 자격기준 및 운영방법)**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방과후 과정 운영을 담당하는 인력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또는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 4. 20.>

②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과 보육을 연계하고 정규교육과정을 포함하여 1일 8시간 이상으로 운영하며,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2. 4. 20.>

③ 교육감은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에 대하여 그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20.>

[제목개정 2012. 4. 20.]

**제22조(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배치하는 특수교육 담당 교사는 학생 4명마다 1명으로 한다. 다만, 도시와 농촌·산촌·어촌 교육의 균형발전,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현황,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및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별 교사는 교육부장관이, 단위 학교·학급별 교사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배치기준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2. 6. 28.>

**제23조(가족지원)**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은 가족상담, 양육상담, 보호자 교육,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할 수 있다.

**제24조(치료지원)**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치료지원에 필요한 인력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면허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 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② 교육감 또는 특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 또는 특수학교에 치료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치료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지원인력)** ① 교육감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지원인력을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인력 수급에 관한 계획의 수립, 지원인력의 채용·배치 등 지원인력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 6. 28.>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지원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특수교육에 관한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 6. 28.>

③ 지원인력의 역할 및 자격은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22. 6. 28.>

[제목개정 2022. 6. 28.]

**제26조(각종 교구 및 학습보조기 등 지원)** 교육감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장이 각종 교구·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27조(통학 지원)** ①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장이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통학 지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통학차량을 각급학교에 제공하거나 통학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현장체험학습, 수련회 등 학교밖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8조(기숙사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기숙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공립 및 사립학교의 기숙사 시설·설비 기준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외에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훈련 등 특정한 장애유형의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은 국가자격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 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 제5장 고등교육 <개정 2017. 5. 29.>

**제30조(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대학의 장은 그 대학에 장애학생이 10명 이상 재학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에 따른 특별지원위원회(이하 “특별지원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장애학생이 10명 미만인 대학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 지원부서가 법 제29조제

1항제1호 및 제3호에 관한 특별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8.>

③ 특별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 4. 18.>

④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학의 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각 호별 해당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 4. 18.>

1. 해당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및 복지 관련 교직원
2.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3.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대학의 장이 인정하는 전문가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23. 4. 18.>

**제31조(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법 제30조제1항 단서에서 “일정 인원”이란 9명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해당 대학의 교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4. 18.>

1. 교육학, 사회복지학, 법학 등 장애인 인권 관련 분야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교육, 보건·의료, 복지 등 분야의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을 소지한 사람
3. 장애학생 지원 및 복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으로 대학의 장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제목개정 2023. 4. 18.]

**제31조의2(개인별 수요 조사 및 교육지원계획 수립 등)**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2.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수단 중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수단 및 기간

② 장애학생지원센터(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장애학생 지원부서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이를 말한다)의 장은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대학의 장에게 보고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의 내용을 해당 장애학생에게 대학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장애학생이 요청하면 해당 계획을 장애학생이 소속된 학과·학부 또는 대학원의 장에게도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별 수요 조사 및 교육지원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 4. 18.]

**제32조(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의 편의제공)** 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영상물의 화면 장면,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화면해설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청각장애인 또는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언어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청각장애인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영상물의 음성 및 음향을 화면에 글자로 전달하는 폐쇄자막
3. 청각장애인등을 위하여 영상물의 음성 및 음향을 손짓, 몸짓, 표정 등으로 전달하는 한국수어 통역

② 대학의 장이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이하 이 조에서 “수업영상물”이라 한다)에 제1항에 따른 편의를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편의를 영상의 형태로 제작하여 수업영상물에 포함하는 방법
2. 교육지원인력을 배치하거나 학습보조기기·보조공학기기 및 정보통신매체 등을 활용하여 제1항

각 호의 편의를 수업영상물과 함께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방법

[본조신설 2022. 6. 28.]

**제32조의2(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이하 “고등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 중에서 고등교육센터를 지정해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6. 그 밖에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 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3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을 보유할 것
2. 법 제3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장비·시설을 갖출 것
3. 법 제3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을 갖출 것

③ 제2항에 따라 고등교육센터가 갖추어야 하는 기준의 세부 내용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10일 이상 관보 또는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⑤ 고등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2항제1호의 조직·인력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
2. 제2항제2호의 사무실, 장비·시설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
3. 제2항제3호의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

⑥ 고등교육센터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⑦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고등교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⑧ 교육부장관은 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고등교육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게시해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등교육센터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3. 4. 18.]

## 제6장 보칙

**제33조(심사청구 절차)** 법 제35조제3항 및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 및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과의 통지에 필요한 서류는 각각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34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8.>

1. 제30조에 따른 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 2016년 1월 1일
- 1의2. 제3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2023년 1월 1일
- 1의3. 제31조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2023년 1월 1일
2.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의 내용을 장애학생에게 알릴 의무: 2016년 1월 1일
3. 삭제 <2017. 5. 29.>  
[전문개정 2016. 12. 30.]

**부칙** <제33406호, 2023. 4.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지원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0조제3항에 따라 구성된 특별지원위원회는 제3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는 경우 제3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는 해당 각 호별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는 부분이 해소되도록 임명해야 한다.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1.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학습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2.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

3. 지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지적 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4. 지체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기능·형태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통을 지탱하거나 팔다리의 움직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신체적 조건이나 상태로 인해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5. 정서·행동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장기간에 걸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지적·감각적·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

나. 또래나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라. 전반적인 불행감이나 우울증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마. 학교나 개인 문제에 관련된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6. 자폐성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 7. 의사소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언어의 수용 및 표현 능력이 인지능력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

나. 조음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다. 말 유창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라. 기능적 음성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 8.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인하여 듣기, 말하기, 주의집중, 지각(知覺), 기억, 문제 해결 등의 학습기능이나 읽기, 쓰기, 수학 등 학업 성취 영역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

#### 9.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지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10.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정서,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하여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

#### 11.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지닌 사람으로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각각의 교육지원만으로 교육적 성취가 어려워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중도중복(重度重複)장애: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각각 하나 이상씩 지니면서 각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이 경우 장애의 정도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선별검사의 결과, 제9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진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

2)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또는 정서·행동장애

나. 시청각장애: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를 모두 지니면서 시각과 청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고 의사소통 및 정보 접근에 심각한 제한이 있는 경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 약칭: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

[시행 2022. 7. 21.] [교육부령 제269호, 2022. 6. 29., 일부개정]

교육부(특수교육정책과) 044-203-656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선별검사나 진단·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검사를 각각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하여 진단·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진단·평가의뢰서를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라 진단·평가의 결과를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알릴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학교에 배치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학교장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의2** 삭제 <2022. 6. 29.>

**제4조(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등)** ① 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매 학년의 시작일부터 2주 이내에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의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개별화교육계획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인적사항과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 수행수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계획 및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각급학교의 장은 매 학기마다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인력의 역할 및 자격)**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학교에 배치되는 지원인력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하여 보조 역할을 담당한다. <개정 2022. 6. 29.>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인력의 자격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 6. 29.>

[제목개정 2022. 6. 29.]

**제6조(생활지도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 ① 법 제28조제6항 후단에 따라 특수학교의 기숙사에 두는 생활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10. 4.>

1.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 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다.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② 법 제28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국립학교에 두는 생활지도원은 학생 5명마다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에는 학생 7명마다 1명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제6조의2(간호사 등의 배치기준)** 법 제28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국립학교에는 간호사를 1명 이상 배치하되, 기숙사에 기숙하는 학생이 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 50명마다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1명 이상 추가로 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0. 4.]

**제7조(특별지원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 결과 통보 등)**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심사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사청구서를 해당 학교의 특별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받은 해당 학교의 특별지원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심사결과통지서를 그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심사청구 결과 통보 등)** ①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 그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이 심사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심사청구서를 해당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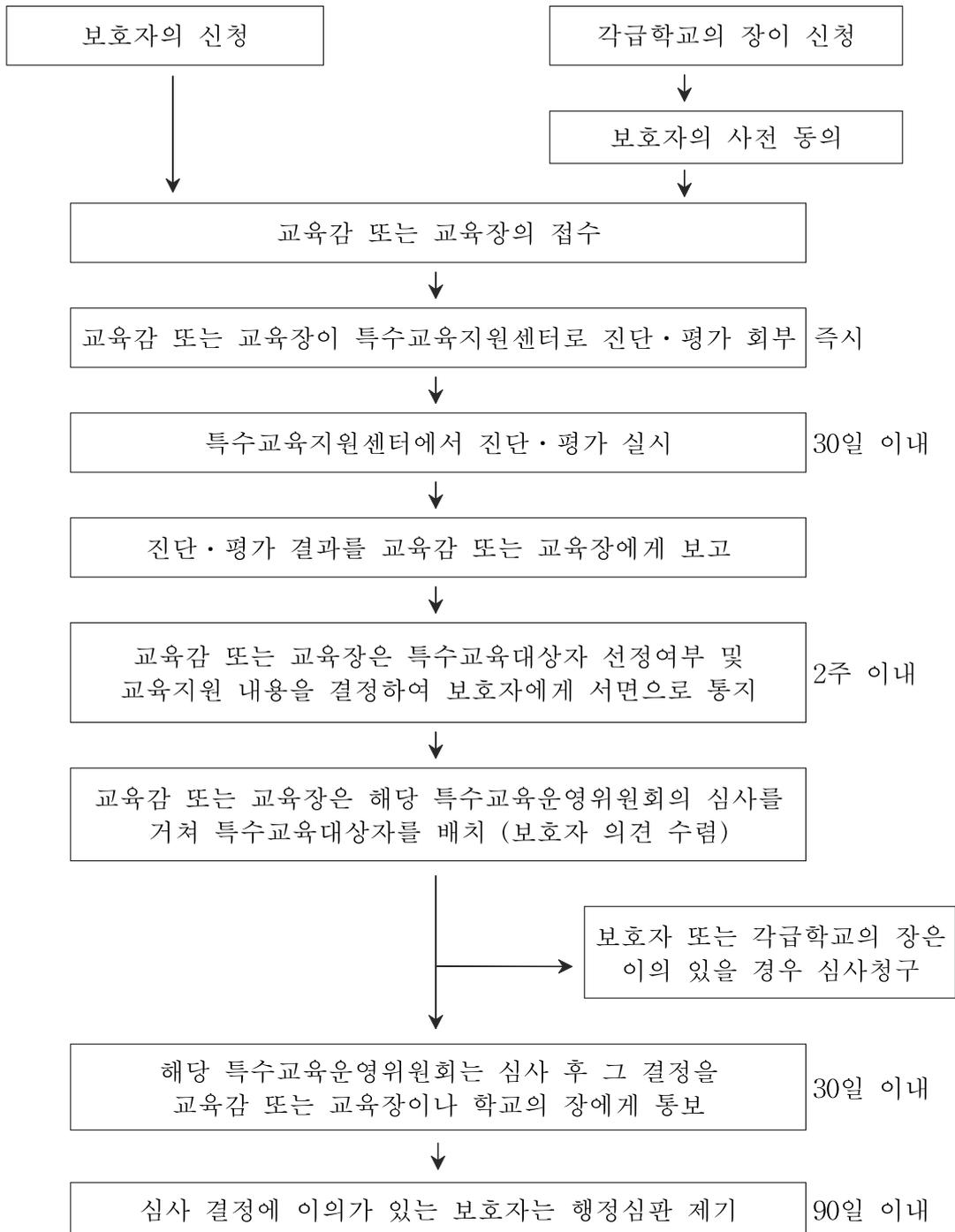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받은 해당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심사결과통지서를 그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269호, 2022. 6. 29.>

이 규칙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의뢰서 제출 및 처리절차



2. 작성시 유의사항

- (가) 각급 학교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가 작성한 동의서를 첨부할 것.
- (나) 접수번호: 시·도(하급)교육청에서 부여하므로 지원자는 기재하지 아니함.
- (다) 의뢰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시·도교육감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합격자에 한함)의 날인이 있어야 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16. 6. 23.>

특수교육대상자 선별검사 및 진단·평가 영역(제2조제1항 관련)

구 분		영 역
장애 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검사		1. 사회성숙도검사 2. 적응행동검사 3. 영유아발달검사
진단·평가 영역	시각장애·청각장애 및 지체장애	1. 기초학습기능검사 2. 시력검사 3. 시기능검사 및 촉기능검사(시각장애의 경우에 한함) 4. 청력검사(청각장애의 경우에 한함)
	지적장애	1. 지능검사 2. 사회성숙도검사 3. 적응행동검사 4. 기초학습검사 5. 운동능력검사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1. 적응행동검사 2. 성격진단검사 3. 행동발달평가 4. 학습준비도검사
	의사소통장애	1. 구문검사 2. 음운검사 3. 언어발달검사
	학습장애	1. 지능검사 2. 기초학습기능검사 3. 학습준비도검사 4. 시지각발달검사 5. 지각운동발달검사 6. 지각운동통합발달검사

비고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위한 장애유형별 진단·평가 시 장애인증명서·장애인수첩 또는 진단서등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통지서

교부번호: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 등  
결정 사항

--

성 명: 성 별(남, 여)

주 소:

생년월일: 년 월 일생

현재 소속기관: 학교 부 제 학년 재학(졸업)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5항에 따라 진단·평가 결과를 통지합니다.

교부자서명①

년 월 일

시·도교육감(교육장) ①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결과통지서

교부번호:

배정학교

학교      부      제      학년      (학급)

성      명:

성      별(남, 여)

주      소:

생년월일:      년      월      일생

현재 소속기관:

학교      부      제      학년      재학(졸업)

위 학생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의 학교로 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교부자서명 ㉠

년      월      일

시·도교육감(교육장)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 장애인차별금지법 )

[시행 2023. 1. 28.] [법률 제18334호, 2021. 7. 27.,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4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와 장애인)**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장애인이란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3. 21., 2009. 5. 22., 2010. 5. 11., 2011. 3. 29., 2011. 6. 7., 2013. 3. 23., 2016. 2. 3., 2017. 9. 19., 2020. 6. 9.>

1. “광고”라 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를 말한다.
2. “보조견”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
3. “장애인보조기구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를 말한다.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보조공학기기 및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정보통신기기,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내용과의 관계 및 이 법에서 정하는 관련 조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4.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5.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6. “교육기관”이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7. “교육책임자”라 함은 교육기관의 장 또는 운영책임자를 말한다.
8. “정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으로 구분한다.
  - 가. “전자정보”라 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이 경우 “자연인 및 법인”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나. “비전자정보”라 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제외한 정보로서 음성, 문자, 한국수어, 점자, 몸짓, 기호 등 언어 및 비언어적 방법을 통하여 처리된 모든 종류의 자료와 지식을 말하며, 그 생산·획득·가공·보유 주체가 자연인·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한다.
  - 다. “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9. “정보통신”이라 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을 말하며, 그 주체가 자연인·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한다.
10. “문화·예술활동”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
11. “문화·예술사업자”라 함은 문화·예술의 요소를 담고 있는 분야에서 기획·개발·제작·생산·전시·유통·판매를 포함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12. “관광활동”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의 용역 등을 제공받거나 관광에 딸린 시설을 이용하는 활동을 말한다.
13. “체육”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의 체육 및 학교체육, 놀이, 게임, 스포츠, 레저, 레크리에이션 등 체육으로 간주되는 모든 신체활동을 말한다.
14. “가정 및 가족”이라 함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가정 및 가족을 말한다.
15. “복지시설 등”이라 함은 장애인이 장·단기간 생활하고 있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 1인 이상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16. “시설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건축물, 거실 및 주요 구조부를 말한다.
17.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이라 함은 사람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도로 및 보도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을 말한다.
18. “건강권”이라 함은 보건교육, 장애로 인한 후유장애와 질병 예방 및 치료,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권리를 말하며, 의료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19. “의료인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2조제1항 따른 의료인과 국가 및 관련 협회 등에서 정한 자격·면허 등을 취득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심리치료사, 의지·보조기 기사 등 장애인의 건강에 개입되는 사람을 말한다.
20. “의료기관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장애인의 건강을 위하여 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치료기관, 약국,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정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21. “괴롭힘 등”이라 함은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행위를 말한다.

**제4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

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④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차별판단)** ① 차별의 원인이 2가지 이상이고,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본다.

②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①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의2(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차별 해소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3년마다 이 법의 이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관련 기관·시설·법인 등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3.]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의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차별금지

### 제1절 고용

**제10조(차별금지)** ①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은 장애인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조합원의 권리 및 활동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1.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3.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편의 제공
  4.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5.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6.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운영과 낭독자, 한국수어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 ②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무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학적 검사의 금지)** ①사용자는 채용 이전에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용 이후에 직무의 본질상 요구되거나 직무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의학적 검사를 실시할 경우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한다. 사용자의 비용부담 방식 및 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사용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한 장애인의 건강상태나 장애 또는 과거 장애경력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절 교육

**제13조(차별금지)** ①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에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6. 7.>

②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1.>

③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교육책임자는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교육책임자 및 교직원들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

육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시험 등(이하 “추가서류 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추가서류 등의 요구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5. 11.>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2. 3., 2017. 12. 19.>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건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4.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6.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교육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수단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 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 ③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의 설치 및 배치,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절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무인정보단말기(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서류발급, 주문·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말한다)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7.>

④ 제3항에 따른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7. 27.>

**제16조(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등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토지 및 건물의 소유·관리자는 당해

토지 및 건물의 매매, 임대, 입주, 사용 등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분리·배제·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①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보조건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을 받는 시설물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규정한 내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통사업자(이하 “교통사업자”라 한다) 및 교통행정기관(이하 “교통행정기관”이라 한다)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5. 11.>  
②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보조건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동승 또는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게 장애 또는 장애인이 동행·동반한 보조건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보다 불리한 요금 제도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에 대하여 이 법에 정한 차별행위를 행하지 아니하도록 홍보, 교육, 지원, 감독하여야 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운전면허시험의 신청, 응시, 합격의 모든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운전면허시험의 모든 과정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거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 제4항 및 제7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① 개인·법인·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인 관련자로서 한국수어 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2. 3.>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 제3조제4호·제6호·제7호·제8호가 목 후단 및 나목·제11호·제19호·제20호에 규정된 행위자, 제13호·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

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2. 3., 2017. 9. 19.>

② 행위자 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을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7.>

③ 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사·문자통역사·음성통역사·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2021. 7. 27.>

④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1., 2016. 2. 3., 2021. 7. 27.>

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영상통화서비스, 문자서비스 또는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계서비스를 포함한다)를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1., 2013. 3. 23., 2017. 7. 26., 2021. 7. 27.>

⑥ 다음 각 호의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관법」 제19조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로이 생산·배포하는 도서자료를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마크가 삽입된 자료, 음성 또는 확대문자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11., 2014. 1. 28., 2017. 12. 19., 2021. 7. 27., 2021. 12. 7.>

1. 출판물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사업자
2.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

⑦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 제2항에 따른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와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4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5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편의의 구체적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 5. 11., 2013. 8. 13., 2021. 7. 27.>

[제목개정 2010. 5. 11.]

**제22조(개인정보보호)** ①장애인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하에 수집되어야 하고, 당해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접근이나 오·남용으로부터 안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 3. 29.>

③장애아동이나 정신장애인 등 본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장애인에 있어서 당해 장애인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련된 동의행위를 대리하는 자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을 위한 도구의 개발·보급 및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제품을 설계·제작·가공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한국수어, 구화,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큰문자 등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의사소통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16. 2. 3., 2017. 12. 19.>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2(관광활동의 차별금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9. 19.]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①체육활동을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제2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절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제1항제1

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가, 신고, 인가 등에 있어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경우

2. 공공사업 수혜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거나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④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1., 2012. 10. 22.>

⑦사법기관은 장애인이 인신구급·구속 상태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인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참정권)**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 제5절 모·부성권, 성 등

**제28조(모·부성권의 차별금지)** ①누구든지 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 등 모·부성권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입양기관은 장애인이 입양하고자 할 때 장애를 이유로 입양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교육책임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그 보육교직원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그 종사자 등은 부모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그 자녀를 구분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6. 7.>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그로부터 위탁 혹은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기관은 장애인의 피임 및 임신·출산·양육 등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정보·활동보조 서비스 등의 제공 및 보조기기·도구 등의 개발 등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양육 등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한 차별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홍보·교육·지원·감독하여야 한다.

**제29조(성에서의 차별금지)** ①모든 장애인의 성에 관한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장애인은 이를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다.

②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성생활을 향유할 공간 및 기타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장애인이 성생활을 향유할 기회를 제한하거나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성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장애를 이유로 한 성에 대한 편견·관습, 그 밖의 모든 차별적 관행을 없애기 위한 홍보·교육을 하여야 한다.

### 제6절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

**제30조(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과중한 역할을 강요하거나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장애인을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외모 또는 신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취학 또는 진학 등 교육을 받을 권리와 재산권 행사,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 자유(이하 이 항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제한·박탈·구속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가족·가정의 구성원인 자 또는 구성원이었던 자는 자녀 양육권과 친권의 지정 및 면접교섭권에 있어 장애인에게 장애를 이유로 불리한 합의를 강요하거나 그 권리를 제한·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복지시설 등의 장은 장애인의 시설 입소를 조건으로 친권포기각서를 요구하거나 시설에서의 생활 중 가족 등의 면접권 및 외부와의 소통권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①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의 의료행위와 의학연구 등에 있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의료행위에 있어서는 장애인의 성별 등에 적합한 의료 정보 등의 필요한 사항을 장애인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건강과 관련한 교육 과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장애인의 성별 등을 반영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천적·후천적 장애 발생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보건·의료 시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장애인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①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 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3장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제33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가진 여성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장애여성에 대하여 임신·출산·양육·가사 등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그 역할을 강제 또는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사용자는 남성근로자 또는 장애인이 아닌 여성근로자에 비하여 장애여성 근로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원활한 수유 지원
2. 자녀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소통방식의 지원
3. 그 밖에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

④교육기관, 사업장, 복지시설 등의 성폭력 예방교육 책임자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장애여성에 대한 성인식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며, 그 내용이 장애여성을 왜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교육기관 및 직업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은 장애여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행위가 장애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학습활동의 기회 제한 및 활동의 내용을 구분하는 경우
2. 취업교육 및 진로선택의 범위 등을 제한하는 경우
3. 교육과 관련한 계획 및 정보제공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
4. 그 밖에 교육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⑥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와 제3항제3호에 필요한 사항의 구체적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요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 및 지원책 등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통계 및 조사연구 등에 있어서도 장애여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장애여성임을 이유로 참여의 기회를 제한하거나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①누구든지 장애를 가진 아동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장애아동에 대하여 교육, 훈련, 건강보호서비스, 재활서비스, 취업준비, 레크리에이션 등을 제공받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장애아동을 의무교육으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아동에 대한 유기, 학대, 착취, 감금,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아동의 인권을 무시하고 강제로 시설 수용 및 무리한 재활 치료 또는 훈련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이 장애를 이유로 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다른 아동과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알맞은 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친권자 및 양육책임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7조(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 ①누구든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등 필요한 법적·정책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장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제38조(진정)**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제39조(직권조사)** 위원회는 제38조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40조(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전담하는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소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준용규정)** ①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진정의 절차·방법·처리, 진정 및 직권에 따른 조사의 방법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국가인권위원회법」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에 따른 진정 및 직권조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2조(권고의 통보)** 위원회는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하거나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제43조(시정명령)** ①법무부장관은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1. 피해자가 다수인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2.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3.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
4. 그 밖에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으로서 이 법에서 금지되는 차별행위를 한 자(이하 “차별행위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차별행위의 중지
2. 피해의 원상회복
3. 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차별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서면으로 하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차별행위자와 피해자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하여 위원회에 시정명령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9.>

⑤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그 내용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9.>

⑥법무부장관이 차별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기간,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9.>

**제43조의2(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① 법무부장관은 제4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기 전에 차별행위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피해자, 진정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무부장관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29.]

**제44조(시정명령의 확정)** ①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시정명령은 확정된다.

**제4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①법무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차별행위자에게 그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②피해자는 차별행위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 제5장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

**제46조(손해배상)** ①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한다.

③법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47조(입증책임의 배분)** ①이 법률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제48조(법원의 구제조치)** ①법원은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에 관한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의 중지 등 그 밖의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

③법원은 차별행위의 중지 및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이

행 기간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를 준용한다.

## 제6장 벌칙

**제49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악의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1. 차별의 고의성
2.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③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5. 11.>

④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벌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0조(과태료)** ①제44조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법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0. 5. 11.>

③ 삭제 <2010. 5. 11.>

④ 삭제 <2010. 5. 11.>

⑤ 삭제 <2010. 5. 11.>

**부칙** <제18547호, 2021. 12. 7.> (도서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8조”를 “제19조”로 한다.

⑨부터 ⑭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시행 2024. 12. 6.]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685호, 2024. 12. 6., 타법개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유초등특수교육과), 063-239-329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내 장애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장애학생들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을 고려한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3.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보조인력지원·보조공학기기지원·학습보조기기지원·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제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4.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교육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 ② 교육감은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의 특성에 적합한 특수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은 법 제17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들이 거주지에 가까운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균형 있게 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특수교육발전계획)

-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특수교육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특수교육의 추진 목표 및 계획
  2. 특수교육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특수교육 대상자 지원에 관한 사항
  4. 특수교육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특수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교육감이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학부모,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특수교육운영계획)** 교육감은 제4조의 발전계획에 따라 특수교육 진흥을 위한 특수교육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협력)** 교육감은 발전계획 및 운영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평생교육 지원)**

-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에 대하여 도지사와 협력하여 지원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에 직업훈련과정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도지사와 협력하여 노력한다.
- ③ 교육감은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생교육문화관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12.6>
- ④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생교육문화관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개정 2024.12.6>

**제8조(특수교육 지원)**

- ① 교육감은 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할 수 있다.
- ③ 학교의 특수교육 대상자가 교수·학습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신청할 경우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지원된 교수·학습용 보조공학기기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⑤ 교육감은 통합교육담당 교사 연수 내용에 학교의 특수교육 대상자가 교수·학습을 위해 사용하는 보조공학기기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다.
- ⑥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거점형 방과후 돌봄교실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노력한다.

**제9조(표창)** 교육감은 특수교육 진흥과 지원에 기여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제10조(시행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부칙** <제5685호,2024.12.6>(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의 시설 이용과 사용료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및 제4항 중 "교육문화회관"을 각각 "학생교육문화관"으로 한다.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2. 16.]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461호, 2024. 2. 16., 타법개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유초등특수교육과), 063-239-329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그 밖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하여 특수교육대상자 교육, 특수교육 연수 등 특수교육 발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2.16.>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조기 발견 및 홍보
2. 특수교육대상 학생 진단 및 평가
3. 특수교육대상 학생 선정·배치 및 관련 상담
4. 특수교육대상 학생 정보 관리(선정, 배치, 재배치, 유예, 면제 등)
5.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 교육지원
6. 특수학급 미설치교 특수교육대상학생 순회교육
7.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상담지원, 가족지원, 치료지원, 지원인력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학습보조 기기지원, 방과후학교지원, 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
8. 특수교육대상 학생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9. 특수교육대상학생 진학 및 전환교육 지원, 관련 학부모교육
10.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긍정적 행동지원
11. 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 특수교육실태조사, 특수교육통계, 장애학생 인권실태조사 등에 대한 지원
12.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및 인권침해 신고 시스템 구축·운영
13. 특수교육대상학생 인권보호 교육 지원
14. 특수교육 연수 및 교수·활동의 지원
15.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합교육 지원
16. 지역별 특화사업에 대한 활성화 지원
17.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제6조(센터의 조직 및 인력)**

- ① 교육감은 센터의 활성화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둔다.
- ② 센터장은 교육지원청의 장이 겸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③ 교육감은 센터에 교육전문직원, 행정직원 등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특수교육지원이 원활하게 이

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성과평가)**

- ① 교육감은 각각의 센터 운영 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운영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센터 운영 성과평가에 참고하기 위하여 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연수)**

- ① 교육감은 센터의 역량을 강화하고 특수교육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재정 지원)**

- ① 교육감은 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기관과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제5461호,2024.2.16>(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16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

[시행 2024. 3. 29.]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487호, 2024. 3. 29., 제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유초등특수교육과), 063-239-329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로 다음 각 목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편의지원”이란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완대체의사소통”이란 의사소통 방법을 보완·대체하는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체계와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수교육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장애학생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편의지원 방식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장애학생 편의지원 기본계획)**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관련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장애학생 편의지원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장애학생 편의지원 추진목표 및 방향

2. 사업별 세부 시행 계획

3.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계획

4. 그 밖에 교육감이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수요조사)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매년 장애학생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의 시기·방법·절차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사업)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교구·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기 지원, 점검 사업

2. 한국수어 통역·문자통역(속기) 지원 사업

3. 장애학생 지원인력 배치 지원 사업
  4. 장애학생 교육활동 편의개선을 위한 상담 지원 사업
  5. 장애학생 이동 및 교육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 사업
  6. 장애학생 편의지원 확대를 위한 교육·홍보 사업
  7.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한 연구 사업
  8. 그 밖에 교육감이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심의)**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수교육법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1. 제5조 장애학생 편의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장애학생 편의지원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제7조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의사소통 지원)**

- ① 교육감은 의사소통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보완대체의사소통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청각 장애학생 등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제공하는 교육 관련 영상물에 한글자막이나 한국수어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교육감은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공헌하거나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단체·법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제5487호,2024.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

[시행 2024. 3. 29.]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486호, 2024. 3. 29., 제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유초등특수교육과), 063-239-329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학 중에 발생한 만성질환 등으로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건강장애학생이 치료 종료 후 학교생활에 원만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장애학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말한다.
  - 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9호에 따른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
  - 나. 화상, 교통사고 등 외상적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학생
2. “병원학교”란 건강장애학생을 위해 병원 내에 설치된 파견학급 형태 등의 학교를 말한다.
3. “원격수업”이란 건강장애학생이 가정, 병원 등 원거리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수업을 통해 학습 지체 및 유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형태를 말한다.
4. “순회교육”이란 건강장애로 인해 장·단기의 결석이 불가피하여 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학생의 교육을 위해 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교사가 직접 방문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지원하는 교육 형태를 말한다.
5.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6. “개별화교육”이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교육방법·교육내용·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7.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건강장애학생을 사실상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수교육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건강장애학생에게 맞춤형 학습지원으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또래 관계 유지 및 심리적·정서적 지원 등을 통해 치료효과를 증진시키고, 치료 종료 후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학교장의 책무)

- ① 건강장애학생의 소속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건강장애학생과 보호자에게 교육과정 편성 및 주요 행사 등 학교운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학교장은 건강장애학생이 소속 학교로 복귀하는 경우 학교생활과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교육지원 계획의 수립 등)** 교육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방향 및 목표
2. 병원학교, 원격수업, 순회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3. 건강장애학생 학교복귀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병원, 원격수업 운영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건강장애학생 소속 학교 담임교사, 병원학교 관계자 등의 연수에 관한 사항
6. 건강장애학생 보호자 교육, 건강장애학생 가족캠프 등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교육감은 매년 건강장애학생의 발병유형과 치료 여부를 조사·관리하여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병원학교)**

- ①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에게 학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병원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병원학교 학생의 학적은 소속 학교에 두고 수업은 위탁교육 형태로 진행하며, 교육감은 출석확인서를 소속 학교에 통보하여 출결을 관리할 수 있다.
- ③ 교육감은 병원학교 관계자를 대상으로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계획을 안내하여, 건강장애학생이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④ 교육과정은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과활동과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구성되며, 배치된 특수교사 외에 인근학교 교사자원봉사단, 원격수업 시스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⑤ 병원학교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원격수업)**

- ①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실시간 양방향 원격수업을 운영하며, 학년 및 학력 수준에 적합한 맞춤형 학습을 지원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원격수업을 받는 학생의 학적은 소속 학교에 두고 원격수업은 위탁교육 형태로 진행하며, 출석 확인은 원격수업 수탁기관에서 정보를 제공받아 관리한다.
- ③ 원격수업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순회교육)**

- ① 교육감은 병원에서 집중적인 치료를 마치고 가정에서 치료를 받거나 통원치료를 받는 건강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순회교육은 「전북특별자치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제2조에 따라 설치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학생의 보호자 등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 ③ 순회교육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1조(개별화교육)** 건강장애학생의 학교장은 특수교육법 제22조에 따라 건강장애학생 개개인의 학습능력과 건강상태에 적합한 교육목표·교육방법·교육내용 등이 포함된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성적 및 평가)** 건강장애학생의 성적 및 평가는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3조(학교복귀 지원)** 교육감 및 학교장은 건강장애학생이 질병 치료 후 또는 치료 과정에서 소속 학교로 복귀하는 경우 심리적·정서적 지원활동,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 활동 등 건강장애학생 학교복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14조(교원연수 등)**

- ①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교과교육 및 심리적응 지도,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의 출결, 성적관리

등에 관한 소속 학교 담임교사 교육 및 연수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학적관리, 교육과정, 행정사항 등과 관련하여 병원학교, 원격수업기관 관계자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 소속 학교의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장애 이해 증진을 위한 자체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과 가족의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건강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위한 건강장애학생 가족캠프, 건강장애학생 보호자 교육 등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①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운영기관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 또는 그 학생의 보호자 등이 요청할 경우 특수교육지도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학습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학교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 병원학교, 원격수업 운영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제5486호,2024.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

[시행 2024. 1. 18.]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387호, 2023. 11. 10., 타법개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유초등특수교육과), 063-239-329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3. “장애인”이란 제2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운영계획의 수립)

-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기본방향
  2. 장애 인식개선 교육 활동 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장애 인식개선 교육 교재 개발, 시간의 편성 및 담당교사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실시에 따른 강사비 등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실태를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의 실시)

-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5조의2에 따라 장애 인식개선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예산 등 지원)

- ① 교육감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교육감은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개발하고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알선하는 등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실시 여부, 운영 형태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무장애 돌봄교실 설치 및 지원 조례

[시행 2024. 1. 18.]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387호, 2023. 11. 10., 타법개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유초등특수교육과), 063-239-335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내 학생들이 이용하거나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춘 돌봄교실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장애 돌봄교실”란 도내 학생들이 돌봄교실에 접근·이용·이동하는 데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된 장소를 말한다.
2. “무장애(Barrier Free) 시설 인증”이란 도내 학생들이 무장애 돌봄교실을 접근·이용·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임을 증명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무장애 돌봄교실 조성을 위한 대상 시설은 도내 학생들이 이용하는 돌봄교실로 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무장애 돌봄교실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1. 무장애(Barrier Free) 돌봄교실 시설 확충
2. 무장애 돌봄교실 개선 인센티브 제공
3.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4. 그 밖에 무장애 돌봄교실 조성과 관련한 사항

**제5조(계획수립)**

- ① 교육감은 무장애 돌봄교실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시민의 의견을 들은 후 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무장애 돌봄교실 조성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장애 돌봄교실 조성목표 및 추진방침
  2. 무장애 돌봄교실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
- ③ 교육감은 무장애 돌봄교실 조성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6조(무장애 시설 인증)**

- ① 돌봄교실 시설에 대한 인증신청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할 수 있다.
- ② 무장애 돌봄교실 시설의 인증기준과 절차는 교육감이 안내한다.

**제7조(무장애 돌봄교실 조성 지원)**

- ① 무장애 돌봄교실 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교육감은 시민 인식개선을 위하여 장애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교육감은 무장애 돌봄교실로 개축 또는 보수를 하려는 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포상)** 교육감은 무장애 돌봄교실 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개인, 단체 등을 시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전북특별자치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시행 2024. 1. 18.] [전북특별자치도교육규칙 제900호, 2023. 11. 10., 타법개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유초등특수교육과), 063-239-335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0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특수교육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4., 2023.11.10.>

**제2조(설치)**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도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교육장 소속으로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지역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개정 2014.3.10., 2023.11.10.>

### 제3조(도운영위원회의 구성)

- ① 도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며, 당연직위원은 중등교육과장, 유초등특수교육과장, 행정과장, 특수교육담당장학관으로 한다.<개정 2010. 9. 1, 2011.8.29, 2023.3.31.>
-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
  2. 특수학교(급)교사
  3. 특수교육대상자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
  4. 특수교육분야의 대학교수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4조(지역운영위원회의 구성)

- ① 지역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교육지원과장(단,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며, 당연직위원은 유초등교육담당장학사(단,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은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담당장학사(단,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은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개정 2010. 9. 1, 2011.8.29, 2023.3.31. 2023.11.10.>
- ③ 위촉위원은 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위촉한다.

### 제5조(위원의 임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6.1.4.>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은 회의 참여 등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 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에 관

한 사항<개정 2016.1.4.>

2. 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급) 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36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5.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특수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각각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회의 운영)**

- ① 도운영위원회는 교육감의, 지역운영위원회는 교육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안전이 단순·명백하여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 **제9조(소위원회)**

-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간사)**

-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
- ② 위원회의 간사는 특수교육담당장학사로 한다.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위원에게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4., 2023.11.10.>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900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2025 전북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계획

---

발 행 일 : 2025. 1.

발 행 처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